

[illegible]발행
서울특별시

조제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
소설치 조례를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근로자 한속

서기一九六二年二月五日

서울특별시
윤 태 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 270호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합숙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서기 一九六三年十一月十一일 발행

등록번호 제 三九號

발령인 서울특별시장

태
운

떡집인 공보실장

نظ

인쇄
경
화
인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학습소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二조 본문 제四호에 다음과 같이 가한다

4 서윤복 변시립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부
칙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로손
과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年二月八日

차
례

내 三九

[illegible]

12.....

강.....사단장

시 : 八四七十一

.....公司

二、

◎서울특별시조례 제二七二호

서울특별시장은 내 려

서울특별시 도로손괴자(道路損壞者) 부담금

정수조례

제一조 (목적) 본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六七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損壞)도로의 수선, 유지, 기타 손괴예방(損壞豫防)에 필요한 시설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한다)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二조 (부담의 범위) ① 법에 의하여 시장이 관할하는 도로를 손괴(손괴오한)한 자업 또는 권위를 하는자 기타 손괴예방(損壞豫防)을 필요케하는 자업 또는 권위를 하는자는 본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한다

제三조 (부담금의 정수) ① 부담금은 별표 제一호

② 과실(過失) 또는 무과실(無過失)도 도로를 손괴(損壞)한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부담금을 부담한다

의 기준에 의하여 정수한다

한정된 부담금을 전담으로 한다

단, 도로이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부담금으로 정수 있다

제四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은 별표 제二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五조 (부담금의 환부) 거납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六조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一,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二, 본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본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

(제 1 호 표)

도로복구비평방단가표

번호	차도	공	종	기	준	단
一	차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종 중종 표종	一 七 五	〇 〇 〇	六 三 〇
二	차도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종 중종 표종	二 一 五	〇 〇 〇	四 六 〇
三	차도	단종시멘트콘크리트	기종 중종 표종	六 一 五	〇 〇 〇	五 〇 〇
四	차도	가설시멘트콘크리트	기종 중종 표종	六 一 五	〇 〇 〇	三 〇 〇
五	차도	가설시멘트콘크리트	기종 중종 표종	六 一 五	〇 〇 〇	一 八 〇
六	차도	회색블라스트콘크리트	기종 중종 표종	六 一 五	〇 〇 〇	六 〇 〇
七	차도	자갈도				三 五 〇
八	보도	세멘트부속				二 六 〇

(제 2 호 표)

완전 복구에 필요한 기술적 방안

一, 차도 복구에 있어서는 완전 전암된 견고한 토질로 잔주하고 절토는 표준의적 구배를 〇.五 한(깊이 五M까지)로 한다

二, 기상포장 노면을 굴착시 깊이 六〇CM 이하에 목적물을 매설하고 六〇CM 중 三〇CM는 환토 하고 三〇CM는 포장키로 한다

三, 로 1 라의 폭을 一三〇CM로 기준해져 매설물 종류 여하를 판문하고 로 1 라가 자유로히 전전할 수 있도록 二〇CM를 가산해시 면적의 횡은 一五〇CM로 계산한다

四, 콘크리트 포장 굴착은 목적구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아무더 작은 면적의 굴착이라도 한 블록(BLOCK)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五, 인도로서 하블록(BLOCK)의 종단만을 굴착할 때에도 굴착의 폭은 전폭으로 계산하고 횡단 굴착시는 세사절도 표준의구배 一.五한로 계산한다

六, 기타 L형 측구, 경계석, 가로수물등이 굴착면

적에 정한 때는 파손으로 본다

七、 굴착 즉시로 판토는 외부로 운반하고 동상에 전단성이 있고 침하율이 적은 사질토(砂質土)로 바꾸어서 굴착장소를 매몰한다.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가곡위생시설 소 신차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시 기一九六二년一二월二二일

서울특별시강 유 내 일

◎서울특별시조례제二七二호

서울특별시립 가곡위생시설 소 신차 조례

제一조 (설치) 가곡진병의 병설 장원과 국산식료품 및 수의 약품의 검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에 가곡위생 시설소(이하 시설소라 한다)를 둔다

제二조 (공무원) ① 시설소에 소장이외에 필요인공

무원을 둔다

② 전임의 공무원의 종류에 관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三조 (수수료) ① 시민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도

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수료불 징수한다

② 전임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서 정

한다

제四조 (시행세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부 칙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립 중·

고등학교 입학전임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시 기一九六二년一二월二四일

서울특별시강 유 내 일

◎서울특별시조례제二七三호

서울특별시립 중·고등학교 입학전임료

징수 조례

제一조 서울특별시립 중·고등학교는 다음에 의하여

입학 전임료를 징수한다

구분	학교별	
	중 하 교	고 등 하 교
구분	九〇원	九〇원

제二조 입학 전형료는 입학 지원자로 부터 받은
 제三조 이미 납부한 입학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
 나한다

부 칙

본 조례는 서기一九六二年二月二四일부터 시행한다

內閣首班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制定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一九六二年三月八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서울特別市條例第二七四號

서울特別市洞名稱 및 區域制定條例

서울特別市の 洞의名稱 및 管轄區域을 別表와 같이
 定한다

附 則

本條例는 西紀千九百六拾參年壹月壹日부터 施行한다
 西紀千九百五拾五年四月十八日 서울特別市條例第六拾六
 號 서울特別市洞設置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洞名稱 및 區域

區 名	洞 名	管 轄 區 域
鐘 路	清 雲 洞	清 雲 洞
	新 橋 洞	新 橋 洞
	宮 井 洞	宮 井 洞
	孝 子 洞	孝 子 洞
	昌 成 洞	昌 成 洞
	玉 仁 洞	玉 仁 洞
	通 仁 洞	通 仁 洞
	樓 上 洞	樓 上 洞
	樓 下 洞	樓 下 洞

鍾 路													
松	司	中	高	惠	鍾	鍾	鍾	世	都	唐	內	內	社
觀	謙	學	松	松	松	松	松	松	松	松	松	松	松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松	司	中	高	惠	鍾	鍾	鍾	世	都	唐	內	內	社
觀	謙	學	松	松	松	松	松	松	松	松	松	松	松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	"	"	"	"	"	"	"	"	"	"	"	"	"
接	隊	貴	勸	慈	維	密	密	三	八	花	昭	安	堅
國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接	隊	貴	勸	慈	維	密	密	三	八	花	昭	安	堅
國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	"	"	"	"	"	"	"	"	"	"	"	"	"

鍾路												
敦義洞	益善洞	慶雲洞	廟井洞	鳳翼洞	鍾路三街	觀水洞	長沙洞	鍾路四街	禮智洞	仁義洞	蓮池洞	苑南洞
忠信洞	鍾路六街	蓮建洞	孝梯洞	鍾路五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敦義洞	益善洞	慶雲洞	廟井洞	鳳翼洞	鍾路三街	觀水洞	長沙洞	鍾路四街	禮智洞	仁義洞	蓮池洞	苑南洞
忠信洞	鍾路六街	蓮建洞	孝梯洞	鍾路五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鍾路三街
〃	〃	〃	〃	〃	〃	〃	〃	〃	〃	〃	〃	〃
中區												
梨花洞	東崇洞	惠化洞	明倫洞	〃	〃	〃	太平路一街	武橋洞	茶橋洞	乙支路一街	太平路二街	小公洞
長橋洞	水角洞	三下洞	南大門路一街	北介洞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梨花洞	東崇洞	惠化洞	明倫洞	〃	〃	〃	太平路一街	武橋洞	茶橋洞	乙支路一街	太平路二街	小公洞
長橋洞	水角洞	三下洞	南大門路一街	北介洞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南大門路二街
〃	〃	〃	〃	〃	〃	〃	〃	〃	〃	〃	〃	〃

八四〇六

八四〇七

[illegible]

八四一〇

西大門

弘	規	靈	杏	紅	橋	玉	天	冷	松	平	橋			忠		萬	中	漢
濟	底	泉	村	把	北	川	然	泉	月		南	"	"	正	"	里	林	芹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三	二	路	二	洞	洞	洞
												街	街	一	街	一		
弘	規	靈	杏	紅	橋	玉	天	冷	松	平	橋			忠		萬	中	漢
濟	底	泉	村	把	北	川	然	泉	月		南	"	"	正	"	里	林	芹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三	二	路	二	洞	洞	洞
												街	街	一	街	一		
"	"	"	"	"	"	"	"	"	"	"	"	"	"	"	"	"	"	洞

葛	佛	大	新	驛	鷹	綠	水	延	老	滄	奉	新	大	大	北	弘	新	付
規	光	泉	寺	村	岩	磬	色	禪	姑	川	元	村	峴	新	阿	智	營	岩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山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葛	佛	大	新	驛	鷹	綠	水	延	老	滄	奉	新	大	大	北	弘	新	付
規	光	泉	寺	村	岩	磬	色	禪	姑	川	元	村	峴	新	阿	智	營	岩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山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	"	"	"	"	"	"	"	"	"	"	"	"	"	"	"	"	"	"

[illegible]

永登浦區

良	溫	宮	梧	開	高	天	開	傍	果	外	內	空	禾	新
才	水		柳	峰	尺	旺	花	花	海	針	針	港	谷	月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良	溫	宮	梧	開	高	天	開	傍	果	外	內	松	禾	新
才	水		柳	峰	尺	旺	花	花	海	針	針	亭	谷	堂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	"	"	"	"	"	"	"	"	"	"	"	"	"	一
														洞

永登浦區

五	五	奉	新	加	秀	始	竄	盤	端	方	舍	牛	院
谷	針	天	林	里	山	興	院	浦	草	背	堂	眠	趾
洞	洞	洞	洞	峰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五	五	奉	新	加	秀	始	竄	盤	端	方	舍	牛	新
谷	針	天	林	里	山	興	室	浦	草	背	堂	眠	院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	"	"	"	"	"	"	"	"	"	"	"	"	一
													洞

2356

中 區

會賢二街	城○ 除外○ 全城
南山洞	會賢洞二街、會賢洞三街、一圓
南谷洞	南山洞一、二、三街一圓
	南學洞、盤字洞、盤場洞、筆洞
	一街、忠武路三街一圓
東國洞	筆洞二、三街一圓
忠武路一、二街一圓	忠武路一、二街一圓
明洞一、二街一圓	明洞一、二街一圓
忠仁洞	忠武路四街、仁親洞二街一圓
治親洞	忠武路五街、墨井洞一圓
永結洞	亭洞、三街、草洞一圓
仁親一街洞	仁親洞一街一圓
樂善洞	藝館洞、五里洞一圓
獎忠一街洞	獎忠洞一街一圓
獎忠二街洞	獎忠洞二街一圓
双林洞	双林洞一圓
光熙一街洞	光熙洞一街一圓
光熙二街洞	光熙洞二街一圓
乙支路二、三街一圓	乙支路二、三街一圓

東大門

乙支路四街一圓	乙支路四街一圓
調練洞	乙支路五街、芳山洞一圓
乙支路六、七街一圓	乙支路六、七街一圓
燕陶洞	水探洞、笠井洞一圓
山林洞	山林洞一圓
舟橋洞	舟橋洞一圓
昌信第一洞	昌信洞一三七番地로부터 四六番地까지의 地域
昌信第二洞	昌信洞四一七番地로부터 五九番地까지와 同六四〇番地로부터 七二番地까지의 地域
第三洞	昌信洞五九三番地로부터 六三九番地까지의 地域
昌信第四洞	昌信洞一番番地로부터 六三九番地까지의 地域
崇仁洞	崇仁洞一圓
新設洞	新設洞一圓
普門第一洞	普門洞四、五、六、七街一圓

一 " 第二洞	二 龍頭第一洞 " 第二洞	三 祭基第一洞 " 第二洞	二 " 第三洞	二 清涼里一洞	二 清涼里二洞	二 典農第一洞
普門洞一、二、三街一圓 龍頭洞中 貞陵川以東全城	" " 以西全城 祭基洞中 洪陵川以東全城 祭基洞中 洪陵川以西斗 祭基洞一四六의 五番地 南側道路是起點으로 一四五番地是經由六六番地의 一에 接는 道路以南의 地域	祭基洞中 祭基第一、第二洞管轄區域을 除外한 全城 清涼里洞一八番地의 三〇一로 부터 清涼里西側에 이르는 道路以南의 全城	清涼里洞中 清涼里第一洞管轄區域을 除外한 全城	典農第一、二番地是起點으로 三九、三九七의 一、三九七의 六、二九四의 二、二九四의 八	典農第一、二番地是起點으로 三九、三九七의 一、三九七의 六、二九四의 二、二九四의 八	典農第一、二番地是起點으로 三九、三九七의 一、三九七의 六、二九四의 二、二九四의 八
二〇四의 九을 經由 北側道路는 道路의 鐵道의 沿하에 이르는 四番地의 二와 三의 以南地域 典農洞一、九番地의 三四番地起點이 以西道路는 同山九、一六의 五、山一、二〇九의 一、二番地의 二六經由 典農洞第一洞 境界點 以西 地域	典農第二洞 典農第一、第二洞管轄區域을 除外한 全城	典農第一、二番地是起點으로 三九、三九七의 一、三九七의 六、二九四의 二、二九四의 八	典農第一、二番地是起點으로 三九、三九七의 一、三九七의 六、二九四의 二、二九四의 八	典農第一、二番地是起點으로 三九、三九七의 一、三九七의 六、二九四의 二、二九四의 八	典農第一、二番地是起點으로 三九、三九七의 一、三九七의 六、二九四의 二、二九四의 八	典農第一、二番地是起點으로 三九、三九七의 一、三九七의 六、二九四의 二、二九四의 八

城 京		興 仁 洞	
同基洞	同基洞一洞	新堂洞中	中國 乙友路七街終點湖心 起點으로 新堂洞二六四의 이 이르는 道路外 北關 永尾橋까지의 溝渠 및 道
低度洞	低度洞一洞	新堂洞中	中國 乙友路七街終點湖心 起點으로 新堂洞二六四의 이 이르는 道路外 北關 永尾橋까지의 溝渠 및 道
里門洞	里門洞一洞	新堂洞中	中國 乙友路七街終點湖心 起點으로 新堂洞二六四의 이 이르는 道路外 北關 永尾橋까지의 溝渠 및 道
面收洞	面收洞一洞	新堂洞中	中國 乙友路七街終點湖心 起點으로 新堂洞二六四의 이 이르는 道路外 北關 永尾橋까지의 溝渠 및 道
上氣洞	上氣洞一洞	新堂洞中	中國 乙友路七街終點湖心 起點으로 新堂洞二六四의 이 이르는 道路外 北關 永尾橋까지의 溝渠 및 道
中和洞	中和洞一洞	新堂洞中	中國 乙友路七街終點湖心 起點으로 新堂洞二六四의 이 이르는 道路外 北關 永尾橋까지의 溝渠 및 道
忘愛洞	忘愛洞一洞	新堂洞中	中國 乙友路七街終點湖心 起點으로 新堂洞二六四의 이 이르는 道路外 北關 永尾橋까지의 溝渠 및 道
新內洞	新內洞一洞	新堂洞中	中國 乙友路七街終點湖心 起點으로 新堂洞二六四의 이 이르는 道路外 北關 永尾橋까지의 溝渠 및 道
黃鶴洞	黃鶴洞一洞	新堂洞中	中國 乙友路七街終點湖心 起點으로 新堂洞二六四의 이 이르는 道路外 北關 永尾橋까지의 溝渠 및 道

藥水洞	르는 道路를 境界로 中國境 界線以東의 地域 新堂洞中 新堂洞三七四의 二 〇 앞 道路를 橫斷 三六九의 二八、三四六의 二一 兩 道 路를 沿하여 金湖洞을 境界 로 三七四의 二〇、三六〇의 二、三五四를 連絡하는 道路 를 境界로 中國境界線 以東 의 地域	靑邱洞	東化洞
栗苑洞	界까지와 六七의七五에서 五 二의一五、五四를 經由 文化 洞境界에 이르는 道路東北 方の 地域 新堂洞中 新堂洞一四七을 起 點으로 一〇九의 三、四八의 一、二九二의八一을 連絡하는 道路를 境界로 溝梁을 沿하 여 二七四의四까지의 地域 新堂洞中 新堂洞三〇二의四을 起點으로 二九七의 一前 道 路를 沿하여 二八九의三을 經由 二八八의二二 앞 道路를 境界로 二九二의七二 앞까지의 地域 新堂洞中 新堂洞二二의 一을 起點으로 九三의五六七의七五 五八을 經由 上往十里洞、下 往十里洞 境界線 以西의 地點	安化洞	有樂洞

二 仁昌洞	三 道院洞	賢仁洞	弘益洞
上往十里洞中 上往十里洞三二 三을 起點하여 北南道路三〇 二五〇二를 經由 東北向道 路를 境界로 濟溪川에 이르 는 以北의 地域 上往十里洞中 仁昌洞의 區域 을 除外한 地域 下往十里中 下往十里洞八九〇 의 六六을 點하여 九五의 一 九 四六의 一七 九三九의 一八六의 一을 經由 馬場洞境界線에 이 르는 道路를 境界로 馬場洞、 金洞洞、新堂洞 境界線以內의 地域 下往十里洞中 下往十里洞八八 八의 六을 起點으로 上往十里洞 境界線을 點하여 八一五、三二 〇、二四二의 二〇〇、二六七、 二五四의 二濟溪川을 連續하는 道路를 境界로 前記洞의 境界			
堂洞	馬場洞	沙斤洞	杏堂洞
界線東北의 地域 下往十里洞中 新堂洞、蘇林洞 仁昌洞을 除外한 地域 馬場洞一圓 沙斤洞一圓 杏堂洞二九八의 一로부터 三三 二의 四에 이르는 道路以南의 地域 杏堂洞中 杏堂洞二九八의 一로 부터 三三二의 四에 이르는 道路以西의 地域을 鹿峰洞一 圓 書院、藥水、兩洞境界點 金洞 洞、四音洞을 起點하여 金 洞洞、八音洞 中央을 通 過하는 道路를 境界로 馬場洞 一圓、新堂洞、蘇林洞의 河川 을 境界로 漢江水流外 合流 하는 河川以東地域			

金南洞	金湖洞山一五番地壹 起點하여 同二九一 同六五番地 中間을 호르는 河川을 南으로 同一 六七番地에 이르는 以東의 地域 金湖洞中 金北洞、金南洞、管 區地域을 除外한 全境을 玉水 洞 一圓	玉水洞	聖水一街洞 聖水洞一街一圓 聖水二街洞 聖水洞二街一圓	長安洞 松亭洞、毛陳洞、華陽洞、陵洞 君子洞、中谷洞一圓	廣宜洞 九宜洞、廣壯洞一圓	新陽洞 新川洞、鳳室洞、紫陽洞一圓	龜川洞 明逸洞、下一洞、高德洞、上一 洞一圓	善隣洞 吉洞、蓮村洞一圓	岩寺洞 岩寺洞一圓	城內洞 城內洞、風納洞一圓	千戶洞 千戶洞一圓、舊橋里
城 北											
松坡洞	松坡洞、石材洞、三田洞、可樂 洞一圓	玉泉洞 二洞、芳巖洞、稽學洞一圓	巨文洞 巨文洞、長旨洞、巨余洞、馬川 洞一圓	院西洞 逸院洞、水西洞一圓	柴觀洞 柴谷洞、栗觀洞一圓	細谷洞 細谷洞一圓	道谷洞 道谷洞(良才里)驛洞、浦二 洞、開浦洞(盤浦里)一圓	砂坪洞 論觀洞、新沙洞、鶴洞、柳陽亭 洞一圓	修道洞 清潭洞、城洞、大峙洞一圓	塔谷洞 廉谷洞、內谷洞、新院洞一圓	城北第一洞 城北洞中 雲水橋道路東南方 地城
城北第二洞	城北洞中 城北第 爲客館區域 을 除外한 全境	東小門洞 東小門洞中									

南仙洞	一區	東小門洞五街外 東仙洞一街一 區 東仙洞二街中 東仙洞管 轄區域 除外是 地域
仙第一洞		三仙洞中、三仙洞四、五街一區
仙第二洞		三仙洞二街中 仙三洞、管轄區 域 除外是 全境 三仙洞 三街一區
仙第三洞		三仙洞一街一區 三仙洞二街 中 二五番地호수 三八九番 地호 이르는 道路以西의 地域
東仙洞		東仙洞二街一區 三街中 同 一三番地호수 二四八番地호 이르는 道路 以東의 地域
西仙洞		東仙洞四街一區 五街中 七三番地호수 東小門洞七街 七番地호 同二七番地호 經由 二五番地호 이르는 道路以南 의 地域
北仙洞		敦岩洞中 敦岩洞以東의 地域
貞和洞		東仙洞 東小門洞六、八街中 西仙洞境界線以上의 地域
東岩洞		安岩洞五街一區
南岩洞		安岩洞二街一區
西岩洞		安岩洞一街、二街一區
鍾岩洞		鍾岩洞一區
月谷洞		上月谷洞、下月谷洞一區
貞陵第一洞		貞陵洞中 貞陵洞支路 小川川 境界線 西南方의 地域
貞陵第二洞		貞陵洞中 第一洞 管轄區域 外는 全境
吉音洞		順阿洞五番地의 一落合橋 一區 貞陵洞의 合流의 地 點을 起點으로 同五六七番地 의 호 이르는 西部外 同地點 호호수 同五五九番地의 二經 由 同山六六番地호 이르는 細 道路 以南의 地域 吉音洞境界

長樂洞 石印洞 圓

洞 管轄區域 除外社 全境

域 고개에 이르는 丘陵以西의 地

吉普洞 境界道路東北方
阿洞同六六番地立春日 仙泉堂

道路 東北方 彌阿洞 落合
橋立平田 同五三番地丘陵以西の地域

西大門

華溪洞、焚洞、牛耳洞、水陰洞一四

倉洞、月溪洞、雙門洞一區

泰陵洞孔陵洞長下溪洞一圓

蘆元洞 中溪洞 上溪洞

道
峯
洞
道
條
洞
放
過
洞
一
洞

西小門河、段同、

[illegible]

送和清四

漢 制
義州路

四

中林洞 中林洞

萬里第一洞 萬里洞 街市 中林洞

麻浦區 于德洞 之 王通 之 三 餘

線道路 東西向

萬里公司

青川金一清、政司、社部、海軍、海管

新編 除外 並全境

忠正路、二街、同利路、正街、忠正街、二忠

忠王諸

三
街
洞
路
街
同

監
督
洞
燐
南
洞
平
洞
松
月
洞
洞

阿規第二洞	起點으로 阿規國民學校와 同 四七八 五七二의 二七을 經 由 同五九九에 이르는 道路 以北의 地域
阿規第三洞	阿規洞中 阿規洞由八番地의 七 은 起點으로 同三七二의 三 을 經由昭示民學校에 이르 는 道路 東北方의 地域
阿規第四洞	阿規洞中 阿規洞 四七八番地 은 起點으로 同七의 一에 이 르는 道路南側과 同四七八番 地로부터 由八番地에 이르는 道路北側의 地域
阿規第五洞	阿規洞中 阿規洞 四九九番地을 起點으로 同三六五 四七八의 二를 經由 同四五七番地에 이 르는 道路 西南側의 地域 阿規洞中 阿規第一, 第二, 第三 第四洞, 管轄區域을 除外한 全
孔德第一洞	孔德洞中 麻浦嶺邊附近의 起點으로 同三의 三, 四, 五 의 一, 二, 八을 經由洞一, 一番地 의 起點으로 이르는 道路以 北의 地域
孔德第二洞	孔德洞中 孔德洞 一, 二番地의 三을 起點으로 同三의 三, 四, 五 의 一, 二, 八을 經由洞一, 一番地의 起點으로 이르는 道路以南의 地域
孔德第三洞	孔德洞中 孔德洞 一, 二番地을 起點으로 同三의 三, 四, 五, 九, 六을 經由洞一, 二番地의 起點으로 이 르는 道路西南方의 地域
孔德第四洞	孔德洞中 孔德第一, 第二, 第三 洞管轄區域을 除外한 全境 新孔德洞 新孔德六, 七番地을 起 點으로 同三의 五, 四, 三을 經 由洞一, 二番地에 이르는 道路以南
新孔德洞	

2362

道林第一洞	道林洞一六〇番地附近에서 山三番地이 이르는 小段嶺以東의 地域
道林第二洞	第一洞管轄區域을 除外한 全境
九老第一洞	九老洞九二番地 先露驛을 起點으로 하여 九六番地와 一一〇番地以北 一一〇九, 三二九, 三一九, 一三四 以西 및 三二七, 三三五, 三三九, 三二八, 三三六, 三四一, 三四五, 三四八 以北의 地域 三四八의 五
九老第二洞	(陳東補充隊入口) 地先으로 早日始興行國道를 經由 三九六番地(始興行 京釜線 鐵道連結點) 先露 連結驛까지 道路 以北의 地域
大休洞	九老第一洞 管轄區域을 除外한 地域 新道林洞中 舊京仁街路以東의
新吉洞	地域 및 新大方洞一圓 新吉洞九五番地에서 又新國民學校을 連하는 道路以南地域 中 新百洞一六〇, 一九八, 二〇二에 이르는 道路以東地域 및 京仁街路以北의 地域 新吉洞 九五番地에서 又新國民學校을 連하는 道路以北의 地域(新吉洞區域을 除外)
新豐洞	新吉洞中 水原街路以西의 地域
新南洞	新吉洞, 新光, 新豐洞을 除外한 地域
大方洞	大方洞一圓
上道第一洞	上道洞山 三二, 山頂險線以東의 地域
上道第二洞	上道一洞을 除外한 全境
寶隆洞	寶隆洞一圓
本洞	本洞一圓
黑石第一洞	黑石洞中 華藏寺所在 山麓에

黑石第二洞	黑石第三洞	良才洞	南城洞	端草洞	靈浦洞	始興洞	加山洞	奉新洞	陽川洞	豐村洞	新谷洞	新亭洞	鉢山洞	空港洞
粉溝渠以西地域 黑石洞中七七番池 設以東 黑石水門에 이르는 溝渠以 南의 地域 靈浦洞 一圓	黑石第一、二洞을 除外한 全城 良才洞、陰雞洞、牛眠洞 一圓	合堂洞、方背洞 一圓	端草洞 一圓 靈浦洞、靈陰洞 一圓	始興洞 一圓 秀山洞、加里峰洞 一圓	新林洞、奉天洞 一圓 加陽洞、麻谷洞 一圓	登村洞、靈村洞、木洞 一圓 禾谷洞、新月洞 一圓	新亭洞 一圓 內鉢山洞、外鉢山洞 一圓	空港洞(松亭里) 一圓						

傍花洞	傍花洞 一圓
開花洞	開花洞 一圓
果五洞	果海洞、五谷洞、五劍洞 一圓
梧柳洞	梧柳洞、大旺洞 一圓
高尺洞	高尺洞 一圓
開峰洞	開峰洞 一圓
水宮洞	宮洞、溫水洞、航洞 一圓

內閣首班의承認을인하여 서울特別市區出張所設置條例를이
에公布한다

西紀一九六二年十二月二十八日

서울特別市場 刊 泰 日

●서울特別市條例第二七六號

서울特別市區出張所設置條例

第一條 ①區의 行政事務를分掌하기 위하여 區出張所

(以下出張所라 한다)를둔다

②出張所의名稱, 位置및管轄區域은別表와같다

第二條 ①出張所에 所長을 둔다

②出張所長은 地方行政事務로서 補한다

③出張所長은 區廳長의 命을 받아 그 管轄區域內에 施行하는 區의 事務를 處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三條 出張所の 職制과 公務員의 種類 및 定員은 市長이 定한다

附 則

本條例는 西紀千九百六拾參年壹月壹日부터 施行한다
制定理由

一九六二年十一月二日法律第一一七二號「서울特別市 道、郡、區의 管轄區域變更에 關한 法律」이 公布되어 京畿道管轄이었던 十二個邑、面、八九個里가 서울特別市로 分合됨에 따라 行政機關을 再調整하여야 하는바 一、今般 세로히 編入되는 地區는 그 大部分이 村落이며 面積이 廣括하여 現在 實施되는 都市行政機關과 體系로서는 그대로 實施할 수 있는 特殊한 立地の條件은 勘案하여야 하며

二、從來의 面은 地方自治에 關한 臨時措置法에 依해 郡守의 委任과 郡의 事務委任規則이 定하는바에 따라 實施된한 事務를 處理할 수 있는 綜合行政機關으로서의 機能을 發揮하였는바 編入地區의 人口、産業、社會、交通、距離等 諸般條件을 考慮하여 從來面에서 取扱하였던 事務는 住民의 便益을 圖謀하기 爲하여 從前대로 處理할 수 있는 機關의 設置가 必要하게 되었으며

三、一九四八年八月十三日 大統領令第一六〇號로 設置되어 運營中이던 既存三個出張所는 地方自治法이 公布施行됨에 따라 그 根據가 失効되었기 이에 對한 設置根據을 附屬하고서 制定하려는 것입니다
別表

서울特別市區出張所名稱位置及管轄區域

名稱	位 置	管 轄 區 域
西大門區	西大門區政府前	社稷洞、露脊洞、弘濟外洞、北加佐洞、南加佐洞、城山洞、中洞
恩平出張所		

城東區 王嶽島出張所	城東區 聖水洞	聖水洞一街、聖水洞二街、松亭洞、華陽洞、毛陳洞、陵洞、君子洞、中谷洞、九宜洞、廣壯洞、新川洞、靈室洞、紫陽洞	城北區 彌阿洞	石串洞、長位洞、琴洞、牛耳洞、水陰洞、上月谷洞、下月谷洞、彌阿洞	東大門區 忘憂里	上鳳里、中下里、黑洞里、忘憂里、新內里	城東區 曲橋里	明逸里、岩寺里、高德里、下一里、上一里、古里、道村里、城內里、鳳納里、曲橋里	千戶出張所	
城東區 松坡出張所	城東區 可樂里	松坡里、二里、芳第里、梧琴里、馬川里、巨余里、長官里、文井里、可樂里、石村里、三田里、逸院里、水西里、榮谷里、栗觀里、細谷里	城東區 驛三里	驛三里、論觀里、新沙里、押鴨亭里、鶴里、溝潭里、三成里、大峙里、良材里、盤浦里、湖二里、廉谷里、內谷里、新院里	城北區 合洞里	合洞里、月溪里、孔德里、下溪里、中溪里、上溪里、道峰里、放鶴里、樓文里	永登浦區 良材里	良才里、新院里、牛眠里、谷堂里、方背里、端草里、盤浦里、靈室里	永登浦區 始興里	始興里、秀山里、加里峰里、新村里、奉天里

永登浦區 陽東出賣所	永登浦區在村屋	加陽里、麻谷里、發村里、慶倉里、大洞里、木谷洞、新寧里、新亭里
永登浦區 陽西出賣所	永登浦區松亭里	內鉢山里、外鉢山里、松亭里、果海里、德花里、陶花里、五谷里、五劍里
永登浦區 梧柳出賣所	永登浦區梧柳里	梧柳里、高尺里、洞峰里、尺旺里、宮里、鐵里、溫水里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수유 토지구획정리 분담금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年十二月二九일

서울특별시장 윤 내 일

●서울특별시조례제二七七호

서울특별시수유 지구획정리분담금징수 조례

제一조 지방자치법 제一二七조와 도시계획법 제三八조의 규정이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이하 구획정리

라 한다)에 요하는 비용에 부담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지구내 토지소

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부터 분담금을 징수 한다

제二조 전조의 분담금은 부과액의 해당하는 토지를 토

지소유자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三조 분담금의 부과 총액은 구획정리를 위한 공

사비 보상비 기계이자 사무비 기타 필요한 경비

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一. 보조금

二. 환수금

三. 예비비 매각금

제四조 전조의 분담금은 구획정리지구내 있는 토지

구획 기타 시설물의 구획정리 전과 정리후의 평

정가격을 비교한 차액 또는 정리후 면적의 비례

에 의하여 부과한다

분담금 부과는 완료후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다

고 인정된시 공사준공전에도 부과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일 에 해당할 시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一, 구획정리를 위하여 토지나 물건 또는 노역을

제공할 때

二,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三,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 및 조세와

기타 부과금의 면세를 받은 기관이 소유하는

토지

제五조 분담금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업과 장

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六조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

에 의한다. 토지소유권 이동이 있을 때에는 一〇일이

내선 구 소유자가 이석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분담금 납부의무는 권리를 취득한 토지

소유자에게 계속한다

제七조 사업의 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분담금을 추징 또는 환부

할 수 있다

제八조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을특별시장의 파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불합 토지 구

획정리 분담금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年十二月二十九日

서울특별시시장 윤 일

●서울특별시조례제二七八호

서울특별시의 불합 토지구의정비 분담금 징수 조례

제一조 지방자치법 제二七조와 토지구획정리 제三八

조의 규정에서 하여 토지구획정리 이관 구획정리

라 한다.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자가 되거나 분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국으로부터 조세 소

유가 또는 관세인도르 부터 분담금을 징수 한다

제二조 조세의 분담금은 부과액의 一 半 을 초과

지 소유자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三조 분담금의 부과 총액은 구회정리자를 위한 공사비 보상비 기채이자 사무비 기타 필요한 경비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一, 보조금
二, 잡수입

三, 체비지 매각금

제四조 전조의 분담금은 구회정리지구내 있는 토지 또는 기타 시설물의 구회정리 전과 정리후의 평가가격을 비교한 차액 또는 정리후 변경의 비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분담금 부과는 완료후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공사 준공전에도 부과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一에 해당한 지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一, 구회정리를 위하여 토지나 물건 또는 노역을 제공할 때

二,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三,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 및 조세와 기타 부과금의 면세를 받은 기관이 소유하는 토지

제五조 분담금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六조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토지소유권 이동이 있을 때에는 一〇일 내 신 구 소유자가 연서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담금 납부의무는 권리를 취득한 토지 소유자에게 계속한다

제七조 사업비 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분담금을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다

제八조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북도 토지 구획정비 분담금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年十二月二十九日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서울특별시조례제二七九호

서울특별시 북도 토지구획정비 분담금 징수 조례

제一조 지구자치법 제一二七조와 도시계획법 제三八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이하 구획정리라 한다)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지구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부터 분담금을 징수 한다

제二조 전조의 분담금은 부과액의 해당한 토지물 토지소유자로 부터 제공받을수 있다

제三조 분담금의 부과 총액은 구획정리를 위한 공사비 보상비 기계이자 사무비 기타 필요한 경비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 一, 보조금
- 二, 잡수입

三, 제비지 매각금

제四조 전조의 분담금은 구획정리지구내 있는 토지

또는 기타 시설물의 구획정리 전과 정리후의 평가가격을 비교한 차액 또는 정리후 면적의 비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분담금 부과는 완료후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공사 준공전에도 부과할수 있다

단 다른 각조의 에 해당할 시는 이를 감안할수 있다

一, 구획정리를 위하여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한 때

二,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三, 공공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 및 조세와 기타 부과금의 면세를 받은 기관이 소유하는 토지

제五조 분담금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六조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약

에 의한다. 토지소유권 이동이 있을 때에는 一(一)이

내에 신 구 소유자가 이전하여 지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분담금 납부의무는 권리를 취득한 토

지 소유자에게 계속된다

제七조 사업비 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분담금을 추징 또는 환부

할수 있다

제八조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

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부 칙
본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면목 토지 구

획정비 분담금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년十二月二九일

서울특별시장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二八〇호

서울특별시 면목 토지구획정리분담금징수 조례

제一조 지방자치법 제二二七조와 토지관리법 제三八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구획정리

라 하고 있는 토지는 비농업 용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력지구내 토지소유

자 또는 관계인으로 부터 분담금을 징수 한다

제二조 전조의 분담금은 부과액의 매달 납 토지를 토

지소유자로 부터 매달받을수 있다

제三조 분담금의 부과 총액은 구획정리위원회의 공사

비 보상비 기계의작 사무비 기타 필요한 경비에

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一, 보조금

二, 잡수입

三, 경비지 매각금

제四조 전조의 분담금은 구획정리지구내 있는 토지

또는 기타 시설물의 구획정리 전과 정지후의 평

형과 건물 규모를 각각 또는 정지후 변경의 비례

에 의하여 부과한다

분담금 부과는 완료후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공사 준공전에도 부과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一에 해당할 시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一, 구획정리를 위하여 토지나 물건 또는 노리를 제공할 때

二,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三,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 및 조세와 기타 부과금의 면세를 받은 기관이 소유하는 토지

제五조 분담금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六조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토지소유권 이동이 있을 때에는 一〇일이내 신 구 소유자가 연서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담금 납부의무는 권리를 취득한 토지 소유자에게 계속한다

제七조 사업비 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분담금을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다

제八조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립 학교 건장 관리소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년十二月三十一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서울특별시조례제二八二호

서울특별시립 학교 건장 관리소 설치 조례

제一조 서울특별시 관하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외의 건강보호 증진과 체위향상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연구 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 학교 건장 관리소(이하 학교 건장 관리 소라 칭

한다)를 설치한다

제二조 학교 건강 관리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의무관으로서 보하되 의사 면허증 소지자
라야 한다

소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부를 창치하
며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한다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들을 둔다

건강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三조 학교 건강 관리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 보호추진

二, 학생 및 교직원의 집단 결진 및 결병 의료

三, 학교 전염병 연구 관리

四, 간이 진료 및 구급 처치

五, 구강 위생

六, 학교 환경 위생의 향상과 정기적 환경조사

연구

七, 각급 학교에 배치된 양호교사 및 교외의 지

도 감독

八,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생 건강에 대한 인

구 조사와 평가

九, 보건 교육 및 건강 상담

一〇, 보건 통계 조사

제四조 서울특별시 관하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

원에 대한 진료는 무료로 한다

제五조 학교 건강 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부 칙

본 조례는 서기一九六三년一月一日부터 시행한다

기가一九五八년三月三일자 서울특별시립 학교 보건소

설치 조례 제一四七조는 이를 폐지한다

참 고

한 학교보건소는 지정된 보건소법 제三조에 의하여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 보

건소의 명칭을 학교 건강 관리소로 개정 하였기 동

설치 조례를 개정 하였임

규 칙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 定員 規則中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서기一九六二年十一月二二일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서울特別市規則第二九八號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 定員 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
正한다

別表第一號 本廳地方公務員定員表中 「地方財經參事九
人」을 「地方財經參事八人」으로 하고 「地方司稅參事三

서울特別市消防官派出所管轄區域中改正表

署別	新名稱	舊名稱	位 置	新 管 轄 區 域	舊管轄區域	變更事由
直轄 派出所			城東區杏堂洞 一八九의二	杏堂洞 沙斤洞 鷹峰洞 下往十里洞 華陽洞 毛陳洞 陵洞 山谷洞 聖水 洞 一街 同 街 廣野洞 九宣洞 新	杏堂洞 沙斤洞 鷹峰 洞 下往十里洞 華陽 洞 毛陳洞 陵洞 中	編入地區 廣州郡 九川面(○個里)

人」을 「地方司稅參事四人」으로 한다

附 則

本 規則은 公布한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 消防官派出所의 管轄區域規則中 改正規
則을 이에 公布한다

서기一九六二年十二月二四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서울特別市規則第一三八號

서울特別市 消防官派出所 管轄區域 規則中 다음과 같
이 改正 한다
別表을 다음과 같이 한다

防	清	東	城
清涼里 派出所	新堂洞 派出所		
東大門區清涼 里洞二	城東區新堂洞 上		
清涼里洞 典農洞 踏十里洞 同基洞 役農洞 里洞洞 新牧洞 編入地區「上原洞 中下洞 最洞 三村 洞 忘愛里」	新堂洞 金海洞 王水洞 編入地區「論觀洞 驛洞 良方洞 監 洞洞 浦二洞 羅谷洞 內谷洞 新院 洞 押賜亭洞 新沙洞 鶴洞 清源洞 成洞 大德洞	「松坡洞 芳華洞 巨余洞 三田洞 二洞 香界洞 石村洞 可樂洞 文井 洞 長旨洞 馬川洞」 「逸院洞 水西洞 榮谷洞 栗觀洞 細谷洞」	鴨洞 上往十里洞 編入地區「下一洞 上一洞 高德洞 明 逸洞 岩寺洞 吉洞 蓮村洞 曲橋洞 城內洞 鳳納洞」
清涼里洞 典農洞 踏十里洞 同基洞 十里洞 同基洞 役農洞 洞 里洞洞	新堂洞 金海洞 王水 洞		谷洞 面牧洞 寒水洞 一街 同二街 廣社洞 九宮洞 新陽洞 上往 十里洞
城東洞洞 東大門 區 編入地區面牧 洞 吳楊州郡 九里 面二五個里」管 轄洞 編入	編入地區 廣州郡產州面 (一個里)管 轄區域洞 編 入		中佳里(二個里) 大旺洞(五個里) 是 管轄洞編入

消 浦	登 永	署
鸞梁津 派出所	直落 派出所	敦岩洞 派出所
永登浦區 梁津洞一五三	永登浦區 永登浦洞四 街一〇〇	城北區敦岩洞 四五八
(編入地區) 鷺梁津洞 本洞 上道洞 墨石洞 銅洞 牛眠洞 良方洞 新院洞 合堂洞	(編入地區) 加洞 峰洞 秀山洞 始興洞 新林洞 奉天洞 「溫水洞 宮洞 梧柳洞 航洞 開峰洞 天田洞 高天洞」	敦岩洞 城北洞 安岩洞 彌阿洞 貞陵洞 下月谷洞 營洞 牛耳洞 水窟洞 鍾岩洞 長位洞 上月谷洞 石串洞 (編入地區) 雙門洞 道祿洞 放鶴洞 倉洞 上溪洞 月溪洞 孔德洞 下溪洞 中溪洞
鷺梁津洞 本洞 上道洞 洞 墨石洞 銅雀洞	永登浦洞三街 同四街 文來洞一街 同二街 同三街 同四街 同五街 同六街 道林洞 九老洞	敦岩洞 城北洞 安岩洞 彌阿洞 貞陵洞 下月谷洞 溪洞 牛耳洞 水窟洞 鍾岩洞 長位洞 上月谷洞 石串洞
編入地區 新東面 (八個里) 管轄 呈編入	編入地區 始興郡 郡東面 (六個里) 吳富川郡 素砂邑 (七個里) 管轄 呈編入	編入地區 楊州郡 盧海面 (二個里) 管轄呈編入

서울특별시립 부녀사업관직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공
포한다

서기一九六二년十二月一日

서울특별시청 윤 태 일

●서울특별시규칙제三〇〇호

서울특별시립 부녀사업관 직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 부녀사업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조제三 제一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지방후생참사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서기
- 지방후생서기
- 지방보모원
- 지방행정서기보
- 지방후생서기보
- 지방보모원보

제四조 제一항중 「지방참사」를 「지방후생참사」로한다
제五조를 삭제한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삼성직업보도원 직제중 개정 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년十二月一日

서울특별시청 윤 태 일

●서울특별시규칙제三〇一호

서울특별시립삼성직업보도원 직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삼성직업보도원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三조 제一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후생참사
- 지방행정주사
- 지방후생주사
- 지방행정서기

지방토목기원

지방위생기원보

지방간호원보

제四조 제一항중 「지방우사」를 「지방위생원사」로 한다

제五조 를삭제한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공립전당 건축법 제정 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서기一九六二年十二月一日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서울특별시규칙제三〇二호

서울특별시립 공립전당 건축법 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 공립전당 건축법 제정 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제二조 제三항중 「지방우사」를 「지방행정우사」 또는

「지방행정우사」로 한다

제三조 제一항 각호중 「지방우사」를 「지방행정우사」

「지방재정우사」로 「지방서기」를 「지방행정서기」 지

방행정서기보」로 한다

동조제二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전항의 공무원의 명칭은 직장이 따로 명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 소년관 적재중 제정 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서기一九六二年十二月一日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서울특별시규칙제三〇三호

서울특별시립 소년관 적재중 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 소년관 적재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二조 제一항중 「지방우사」를 「지방행정우사」 「지방
우생우사」로 한다

제三조 제一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후생서기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후생서기보

제四조 및 제五조를 삭제한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 보건소 직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서기一九六二년十二月一日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서울특별시규칙제三〇四호

서울특별시립 보건소 직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 보건소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二조 제三항중「의화」를「지방보건의무관보」로 한다

제三조 제一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기사

지방위생기사

지방보건간호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위생기사보

지방보건기사보

지방보건간호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보건기원

지방위생기원

지방보건간호원

지방행정서기보

지방보건기원보

지방위생기원보

지방보건간호원보

제四조 제五조 및 제六조를 삭제한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行政標準化研究委員會規則은 制定하여 이를公布한다

西紀千九百六十二年十二月一日

서울특별시장 장 지 인

●서울特別市規則第三〇五號

서울特別市行政標準化研究委員會規則

第一條 (設置) 市行政全般의 式樣 調査 調査研究

하고 行政能力의 向上을 爲한 市政의 標準化에 關한 爲한 서울特別市의 서울特別市行政標準化研究委員會를 둔다

第二條 (任務) 1 委員會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 一、行政事務의 簡素化에 關한 事項
- 二、行政事務處理의 標準化에 關한 事項
- 三、業務量과 人力의 調整에 關한 事項
- 四、權限과 責任의 移讓에 關한 事項

五、行政便覽作成에 關한 事項

六、行政機構의 再檢討에 關한 事項

七、行政區域의 變更과 調整에 關한 事項

八、洞行政의 強化에 關한 事項

2 前項의 關한 事務로서 改善을 要하는 것은 主務課로 하여금 그 資料를 提出케 할 수 있다

第三條 (構成) 1 委員會는 委員長과 委員으로서 構成한다

2 委員長은 全副調整官이 되고 委員은 市長이 委嘱한다

3 委員長은 必要한 時에 調査員을 委嘱할 수 있다

第四條 (委員長의 職務) 1 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하고 必要한 時에 會議을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2 委員長이 有故時에는 委員長이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五條 (委員會의 參與) 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그 實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으로 하여금 出席義務케 할 수 있다

第六條 (庶務) ①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幹事一人과 書記一人을 둔다

第七條 (委員의 實費辨償) 委員이 總委員會의 職務에

從事하였을 때에는 市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手

當을 支給할 수 있다 但 市所屬公務員인 委員에

게는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八條 (施行細則) 委員會運轉에 關하여 必要한 事

項은 委員會議의 決定에 따라 委員長이 이를 定한

다

附 則

本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 한다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토지

개량사업 보조교부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년二月二八일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서울특별시규칙제三〇八호

서울특별시 토지개량사업 보조금 교부규정

제一조 (목적) 본 규정은 농지의 개발개량 및 보

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

별시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二조 (보조금 교부) 보조금은 토지개량사업을 하

는 자(이하는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제三조 (보조비) ①보조금은 공사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하여 교부한다 단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것에 한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一、농지의 관개와 배수의 개선을 위한 사업은

백분의七〇이내

二、해면 또는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농지

토하는 사업은 백분의八〇이내

三、임야 기타의 토지를 농지로 하는 사업은 백

분의七〇이내

四、농지정리 및 배수기타 농지의 구획 또는 경

界的 변경을 위한 사업은 백분의 五〇이내

②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토지개발사업에 수반하는 방수시설 도로의 신설 또는 비닐하우스 등 축공사에 대하여는 전항 각호의 예외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단 부속공사의 관계는 서울특별시장이 사정한다

제四조 (보조금 산출의 기초) 1. 보조금 산출의 기

초가 된 공사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一, 측량비와 설계비

二, 공사 감독비

三, 용지매수금액과 보상금

四, 공사로 인해와 실비비

五, 노임

六, 기타 직접공사에 요하는 비용

② 전항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사정한다

제五조 (사업년도) 보조금을 받을 사업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기재년도에 의한다

제六조 (보조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지구의 소재지 명목 사업외 공금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기재한 토지개발사업 보조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년도에 공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년도와 공사년도만을 기재한 서면과 년도별 예산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七조 (신청 기간)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전년도 말 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八조 (보조 지령) 1. 서울특별시장은 제六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정하여 지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지령서 교부전액가 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九조 (년도할 변경) ①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은 사

업의 공사년도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년도별 예산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의 정도에 의하여 기정의 보조금액 또는 보조금 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十조 (사업 계속등) ①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계속한 자는 계속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농업상 이용을 목적으로 미간지의 개간허가 국유지의 대부 또는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함으로써 허가대부 또는 면허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다시 당해허가 대부 또는 면허를 받았을 때에는 계속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없다 단인이 동일한 목적과 공사 설계에 의하여 허가대부 또는

면허를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十一조 (부조금 교부의 청구) ①제八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공사실정 조서와 공사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공사준공후 지체없이 공사실정조서와 공사비 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공공단체는 부득이한 경우에 시공중의 공사에 대한 보조금의 진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진도를 받은 공공단체는 공사 준공후 또는 사업년도말에 공사실정조서와 공사비 정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十二조 (보조금액의 종감) ①공사비 정산액이 보

조금액 산출의 기초가 된 공사비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의 정도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감소할 수 있다

② 공사비 정산액이 보조금액 산출의 기초가 된 공
사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증액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전二항의 규정은 전 조 제三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회 교
부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十三조 (사무소 설치등) 사업자는 사업 시공상 적
당한 장소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의 상황 비
용의 수지 기타 사항을 명백히 하는 서류와 장
부를 비치 하여야 한다

제十四조 (신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一, 공사를 하였거나 종료하였을 때
- 二,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 三, 주소, 경영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 四, 사무소의 설치 또는 그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
- 五,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② 전항 제五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상금 또는 파
산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十五조 (검사) 사업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사
업년도가 종료하였을 때 또는 각 사업년도의 예정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十六조 (감독)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
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구하고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閲 또는 공사의 진
사를 감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十七조 (보조금의 교부정지 또는 폐지) 서울특별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一
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一, 보조금회계상업에 관한 법령에 위반 하였을 때
二, 분 구상 또는 분 구예산의 일부가 불충분한
하였을 때
三,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였을 때

四, 사업 성공의 가망이 없음에

五, 보조금교부의 목적인 토지 또는 설비를 농업

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때

六, 사위에 수단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때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서기 一九六二년 一월一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정) 서기 一九五八년 九월二十四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一五—호 토지개발사업 보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전 토지개발사업 보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받은것은 본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받은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 규정중 제三조의 규정은 서기 一九

六二년 十二月三十一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서기 정인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一九六二년十二月二十八일

서울특별시 장 율 태 일

●서울특별시규칙제三〇九호

서울특별시 동서기 정인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서기 정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一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一조 서울특별시 각동에 배치한 동서기 총원 二七九명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서기 一九六三년 一월 一일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 區, 出張所, 職制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一九六二年十二月三十一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서울特別市規則第三一〇號

서울特別市 區, 出張所職制改正規則(案)

서울特別市 區, 出張所 職制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一條 (目的) 서울特別市 區, 出張所의 機構와 管

掌事務는 本規則에 準한다

第二條 (職權) ①區, 出所에 於하의 公務員은 次

地方行政參事

地方行政主事

地方司稅主事

地方厚生主事

地方農業技士

地方行政書記

地方司稅書記

地方土木技員

地方農業土木技員

地方建築技員

地方行政書記補

地方農業土木技員補

地方司稅書記補

地方建築技士補

②前項의 公務員의 定員은 따로 定하는 條에 依한다

第三條 (特別職) ①區出所에 必要에 따라 囑託 및

勞務員을 用할 수 있다

②囑託은 委託받은 事務를 處理하고 勞務員은 勞

務에 從事한다

第四條 (所長) ①區出所에 所長을 두되 地方行政

參事로 補한다

②所長은 區廳長의 命을 받아 所務를 掌理하며 所

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五條 (管理事務) 區出所는 다음 事項을 掌掌한다

人事, 總務, 文書, 官印, 廳中圖東, 當直, 宿直, 會

計, 選舉, 洞의 指導, 監督, 公報, 公債, 貯蓄, 商工,

農林, 農地, 柴積, 地方稅外 稅外收入의 賦課徵收,

地方金融 및 地籍, 國稅의 委託徵收, 保健, 厚生, 住

宅, 勞動, 職業輔導 및 婦女와 靑少年의 指導, 清掃

紀念의 啓蒙昂揚, 公衆便所의 施設管理, 戶籍, 印

鑑, 住民登錄, 人口調査, 諸證明, 埋火葬, 兵事, 道

路, 河川, 下水道, 公園, 建築統制에 關한 事項을

掌掌한다

附 則

①本規則은 西紀一九六三年一月一日부터 施行한다

서울특별시 보광동 수원지 공사 사무소 직제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年十二月三十一일

서울특별시장 윤 테 일

●서울특별시규칙제三一二호

서울특별시 보광동 수원지 공사 사무소 직제

제一조 (직무) 서울특별시 보광동 수원지 공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보광동 수원지 건설에

수반되는 공사와 감독 및 공사용 기계의 출납보관

공사장내의 재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二조 (소장) ①사무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지방토목기과로서 보한다

③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장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三조 (공무원) 사무소에 소장이외에 다음의 공무원

원을 둔다

지방행정주사

지방토목기사

지방토목기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토목기원

②전항의 공무원의 임원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학습소 직제를 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年十二月三十一일

서울특별시장 윤 테 일

●서울특별시규정三一二호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학습소 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학습소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三조 제四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職 制									
市議會	雜 則	通 則	企調室	官報室	公務局	內務局	財務局	教育局	計都局
觀光局	運輸局	保健局	社會局	清掃局	產業局	建設局	水道局	警察局	貨儀服 務式務
會議規則、委員會、條例、費用辨償條例等		內務部에서 示達된 例規通牒	市職制事業所職制에 關한 例規通牒		下部機關事業所公共施設其他各種委員會等의 設置條例 및 發用辨償規則等				
服 務 式 實 動 關 關 通 牒									
人事									
通 則	任 用	銓 衡	報 酬	懲 戒	兵 役	教 育	外 務	文 書	內 政
選 舉	再 建 班	國 民 投 票	各 級 選 舉						
人事事務에 關한 通則의 인	任用事務에 關한 通則의 인	銓衡事務에 關한 通則의 인	報酬(年金包含)에 關한 通則의 인	懲戒事務에 關한 通則의 인	公務員兵役에 關한 通則의 인	公務員教育에 關한 通則의 인	公務員規程、委任專決規程其他處務에 關한 通則의 인	官印管守規程、文書編纂區分規程市報其他 文書에 關한 通則의 인	區行政에 關한 例規通牒
									洞行政 및 住民登錄에 關한 例規通牒
									再建班에 關한 例規通牒
									國民投票에 關한 例規通牒
									各級選舉에 關한 例規通牒

2276

[illegible]

產 業							
商 政	雜 則	管 理	文 化	成 育	教 育 委 員 會	學 務	
商 務 雜 則	市 場 工 則	財 務 管 理	學 術 講 習	文 化 施 設	獎 學 則	通 則	
商 務 及 工 業 關 關 例 規 通 則 市 場 關 關 例 規 通 則 度 量 衡 電 氣 中 小 企 業 指 導 關 關 例 規 通 則		學 校 財 產 關 關 通 則 的 例 規 通 則 學 校 出 納 經 理 關 關 通 則 的 例 規 通 則 教 育 行 政 關 關 各 節 關 關 例 規 通 則	市 立 國 立 講 習 及 文 化 財 保 存 關 關 通 則 的 例 規 通 則 私 設 學 術 講 習 關 關 通 則 的 例 規 通 則	成 人 教 育 關 關 通 則 的 例 規 通 則	初 中 高 等 農 業 大 學 關 關 係 關 關 通 則 的 例 規 通 則 教 育 委 員 會 關 關 通 則 的 例 規 通 則	學 務 關 關 通 則 的 例 規 通 則	
社 會 健							
勞 務 施 設 動 護	雜 則	山 林	地 政	農 政	燃 料	需 給	
勞 務 施 設 動 護		農 地 改 良	農 地 改 革	畜 產 改 善	雜 糧 管 理	需 給	
勞 務 行 政 關 關 例 規 通 則 老 人 亭 兒 童 保 護 所 典 當 舖 關 關 例 規 通 則 救 護 軍 警 接 護 關 關 例 規 通 則		山 林 保 護 及 山 地 砂 防 事 業 關 關 例 規 通 則 他 章 節 關 關 例 規 通 則	農 地 改 革 事 業 關 關 例 規 通 則 農 地 改 良 事 業 關 關 例 規 通 則	農 產 及 畜 畜 關 關 例 規 通 則 農 產 及 畜 畜 關 關 例 規 通 則	農 產 及 畜 畜 關 關 例 規 通 則 農 產 及 畜 畜 關 關 例 規 通 則	農 產 及 畜 畜 關 關 例 規 通 則 農 產 及 畜 畜 關 關 例 規 通 則	

警 察									
保 安		警 務		衛 生		婦 女 事 務		住 宅	
任 用		服 務 則		雜 則		醫 務 設 施		婦 女 事 務 設 施	
警察官任用에 관한 例規通牒		警察行政區域其他 警察行政通則의 例規通牒 警察官服務 및 教養에 관한 例規通牒		防疫 雜則 防疫施設에 관한 例規通牒 美容師 其他 衛生에 관한 例規通牒		衛生施設所, 集會場, 墓地에 관한 例規通牒 衛生監視에 관한 例規通牒 保健所, 其他 保健行政에 관한 例規通牒		市立病院 其他 警察施設에 관한 例規通牒 警察行政에 관한 例規通牒 警察行政에 관한 例規通牒	
計 劃 市 道									
計 劃		上 水 道		雜 則		清 報		警 備	
都市計劃 區劃整理		水道 雜則 水道施設 給水施設		證 明		消 防		交 通	
都市計劃에 관한 例規通牒 換地에 관한 例規通牒		水道運營 및 使用料 등에 관한 例規通牒 水源貯水配水施設에 관한 例規通牒 水道行政에 관한 各節에 屬하지 아니하는 例規通牒		市民證 其他 證明에 관한 例規通牒 警察行政에 관한 各章節에 屬하지 않는 例規通牒		消防에 관한 例規通牒 消防에 관한 例規通牒		保安行政에 관한 例規通牒 交通行政에 관한 例規通牒	

●서울特別市訓令第一三九號

서울特別市區各課係別事務分掌事項中 다음과 같이 改

各 區 廳 長
各 區 出 張 所 長

清 掃 污 物	運 輸 觀 光	
	運 輸	觀 光
糞 尿 芥 雜 則	車 輪 雜 則	建 築 雜 則
廁 芥 清 掃 에 關 한 例 規 通 牒 糞 尿 收 去 에 關 한 例 規 通 牒 清 掃 行 政 에 關 한 各 節 에 하 지 아 니 하 는 例 規 通 牒	自 動 車 登 錄 에 關 한 例 規 通 牒 配 車 駐 車 에 關 한 例 規 通 牒 運 輸 行 政 에 關 한 各 節 에 하 지 아 니 하 는 例 規 通 牒	建 築 行 政 에 關 한 例 規 通 牒 都 市 計 劃 에 關 한 各 節 에 하 지 아 니 하 는 例 規 通 牒

正 韓 日

西 紀 一 九 六 二 年 十 二 月 三 一 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서울特別市區 各課係別事務分掌事項中改正
서울特別市區各課係別事務分掌事項區出張所欄을 다음과 같이 한다

區出張所	總 務 係
	一、人事에 關 한 事項 二、文書에 關 한 事項 三、官印管守에 關 한 事項 四、儀式、會議、機密에 關 한 事項 五、廳中團案 및 當直에 關 한 事項 六、服務 및 給與에 關 한 事項 七、公報 및 統計에 關 한 事項 八、洞行政指導監督에 關 한 事項 九、會計、物品出納保管에 關 한 事項 十、圖書 및 館品保管에 關 한 事項 十一、文化財及成人教育에 關 한 事項

產業係	一、選舉에 關한 事項 二、土木建築業 統制에 關한 事項 三、貯蓄에 關한 事項 四、其他所內他係主管의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稅務係	一、農林에 關한 事項 二、農地에 關한 事項 三、商工 및 量器에 關한 事項 四、畜產에 關한 事項 五、糧穀에 關한 事項 六、農村教育 및 農學에 關한 事項 七、燃料에 關한 事項 八、金融에 關한 事項 九、市場及 物價에 關한 事項 十、財產稅、取得稅、自動車稅目的稅賦課에 關한 事項 十一、所得稅附加稅、法人稅附加稅、營業稅附加稅、贈與稅附加稅賦課에 關한 事項 十二、歲入事務에 關한 事項
社會係	四、押留財產滯納處分에 關한 事項 五、稅外諸收入 및 現金出納에 關한 事項 六、市稅徵收 및 滯納處分에 關한 事項 七、國稅委託徵收에 關한 事項 八、土地課稅基準調査에 關한 事項 九、公債에 關한 事項 十、市有財產管理에 關한 事項 十一、厚生、救濟에 關한 事項 十二、勞動에 關한 事項 十三、職業指導에 關한 事項 十四、婦女及 青少年指導에 關한 事項 十五、住宅에 關한 事項 十六、保健、衛生에 關한 事項 十七、防疫에 關한 事項 十八、醫藥에 關한 事項 十九、清道에 關한 事項 二十、戶籍에 關한 事項 二十一、戶籍에 關한 事項 二十二、住民登錄 및 印鑑에 關한 事項

사 명

- 四、兵事に關한事項
- 五、人口動態에關한事項
- 六、埋火葬에關한事項

●一九六二年十一月二十九日

수도국급수과(수원담당)	근무를 면함	朴 源 恒
수도국급수과 지방토목기좌(수원담당)	면함	廉 昌 浩
수도국시설과(시설담당)	근무를 면함	丁 奎 榮
수도국시설과 지방토목기좌(시설담당)	면함	朴 元 恒
수도국시설과(공무담당)	근무를 면함	
수도국시설과 지방토목기좌(공무담당)	면함	
수도국시설과 근무를 면함		

●一九六二年十一月三十日

시립야동보호소 지방보호원 朴 孟 子

위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一九六二年十一月二十三日

수도국시설과 지방토목기사고 韓 昊 淑

사무형편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상공부로 진출

●一九六二年十二月五日

수도국급수과 지방기계기원 崔 鍾 旭

위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一九六二年十二月六日

중구보건소감종로보건소 소장 지방보건사무관보 元 明 洙

분무지 직무를 면함

●一九六二年十二月三日

재정서기관에 임함

四호봉을 감함

시울특별시 내무국 사계과장에 보함

이 재 용

●一九六二年十一月六日

서울특별시 부서장에 인함	김 대 만	六호봉을 금함	지방행정서기보 윤 준 옥
一금二호봉을 금함			
●一九六二年十二月十日			
건설국토목과 근무를 명함	유 능 준	六호봉을 금함	행정서기보 김 태 현
六호봉을 금함			
원호대상자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밤 상 문	六호봉을 금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六호봉을 금함			
원호대상자			
종로구 근무를 명함	이 용 덕	六호봉을 금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六호봉을 금함			
원호대상자			
성북구 근무를 명함	이 병 준	六호봉을 금함	남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행정서기보 이 병 준			

원호대상자	지방사세서기보	선	정	덕
동대문구 근무를	경합			
六호봉을	급함			
원호대상자	지방행정서기	신	원	원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경합			
三호봉을	급함			
용산구 지방서기	지방행정서기보	이	화	영
도시계획국건축과 근무를	경합			
六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지방서기	지방행정서기보	김	윤	성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경합			
一호, 인가원十六원을	급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행정서기	조	사	선

북부수도사업소 근무를	경합			
一호봉을	급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행정서기	고	승	열
중부수도사업소 근무를	경합			
一호, 인가원九〇원을	급함			
종구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정	영	용
북부수도사업소 근무를	경합			
三호봉을	급함			
종구 지방행정서기보	지방사세서기보	이	난	수
중로구 근무를	경합			
一호, 인가원四원六을	급함			
서대문구 지방사세서기보	지방행정서기보	이	두	재
청소국청소서기보	지방행정서기보	이	두	재
五호봉을	급함			

도시계획국 건축과 지방사제서기보	●서기一九六二年二月一〇일	남부명원지방간호원 李 光 玉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一九六二年二月八일	중구청소과과장 延 基 虎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一九六二年二月五일	행정서기관 심 윤	국가공무원법 제五〇조의 五의 규정에 의하여 서기	一九六二年七月二四일자전책처분율 동일자로 취소함	●서기一九六二年二月一〇일	지방토목기원보 이 기 정	도시계획국계획과근무를 명함	七호봉을급함	지방토목기원보 노 기 원	수도국시설과근무를 명함	七호봉을급함
지방토목기원보 박 준 석	명함	마포구시설과근무를	지방토목기원보 김 해 문	구의수원지시설과근무를 명함	七호봉을급함	지방토목기원보 박 문 영	동부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七호봉을급함	지방토목기원보 정 구 부	대원산배수지근무를 명함	七호봉을급함	지방건축기원보 강 태 성	도시계획건축과근무를 명함	七호봉을급함	지방진기기원보 김 중 호	건설국토목과근무를 명함	七호봉을급함

영동도보검소근무를 명함	지방위생기원보	김 동 훈
七호봉을급함		
시민회관근무를 명함	지방기계기원보	백 형 호
六호봉을급함		
종로보건소지방위생기원보 명함		김 해 숙
방역사무소근무를 명함	방역사무소지방보건기원보	김 인 순
용산보건소근무를 명함		
●시기一九六二年一二월二八일	지방행정서기보	이 길 동
건설국포장과근무를 명함		
六호봉을급함	지방행정서기보	양 병 구
중구근무를 명함		
六호봉을급함	지방행정서기보	서 정 복
동대문구청근무를 명함		
六호봉을급함	지방사서기보	정 병 순
서대문구청근무를 명함		
六호봉을급함	지방행정서기보	김 태 순
성동구청근무를 명함		
七호봉을급함		
●시기一九六二年一二월二〇일	서대문구청소과장지방행정참사	윤 상 덕
중구청소과장근무를 명함		
중구호령과장지방행정참사		이 돈 수
서대문구청소과장근무를 명함		
내무국시정과(병사)행정사무관		고 병 환
중구호령과장근무를 명함		
산업국시량과(조작)지방농업기화		조 낙 환
산업국(대기)근무를 명함	산업국시량과(조작)행정사무사보	김 상 의

공보실근무를 명함		서대문보전소지방법보전간호원보 김 호 결	
북부수도사업소지방법정주사 최 윤 옥	북부수도사업소지방법정주사 최 윤 옥	원예의하여그직을 명함	
시부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시부수도사업소지방법토목기원 이 승 환	●一九六二년十二月二四일	
산업국산공과근무를 명함	용산구지방법행정서기 황 찬 규	지방계약원 장 수 변	
기획조정관실근무를 명함	산업국시량과재경주사 박 준 호	영등포방원 근무를 명함	
●서기一九六二년十二月二四일		六호봉을 급함	
북부수도사업소지방법토목기원 김 만 윤	용산구 근무를 명함	농업기원보 윤 석	
동부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七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서기보 문 명 배	
동부수도사업소지방법토목기원보 장 석 재	보전사회국 주대과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 김 기 옥	
동부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六호봉을 급함	원호대상자	
북부수도사업소지방법토목기원 김 중 열	원호대상자	중구 근무를 명함	
북부수도사업소지방법토목기원 이 승 환	六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서기보 김 기 옥	
북부수도사업소지방법토목기원 노 경 식	원호대상자	지방행정서기보 박 상 훈	

남양주 파주 가평 연천

六、외국인 노동

원호대상자

지방행정서기보전영운

남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병행함

六호봉을 넘었다

위호대상자

一九六二年十二月二十四日

지방핵정서기보 金潤煥

보건사회부
보건과
국무총
리관

六호봉을 끝함

원호대상자

자
방
화
현
시
기
보
文
銅
打

동대문구 근무를 병행함

॥ श्रीगणेशाय नमः ॥

유한대수

ス
ハ
ミ
ス
人
フ
リ
山

松

三、

七五봉을
합함

원호대상자

지방행정서기보 咸鍾淑

서대문구 교육청

大正十一年

인호대상자

一九六二年十二月二十四日

북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鄭 龍 一

의사
의과
고직을
합

九六二 年十一월二十八일

아동보호소
지방보육원
安仁
淑

그
작
은
명

산악곡 지방농업기작 趙 洛 熙

산악과
물고
물고

과
지
사
장
榮
樂

今
日
の
世
界

木性

가
나
다
라
마

부친군소사음오류증장소 지방토목지원보

柳 在 華

서울특별시 전임읍 명합 영등포구 군무를 명합

부친군소사음오류증장소 지방농업지원보

金 熙 奎

서울특별시 전임읍 명합 영등포구 군무를 명합

양주군 구리면 지방행정주사보 金 義 美

서울특별시 전임읍 명합 동대문구 군무를 명합

양주군 구리면 지방행정농업지원보 龍 永 善

서울특별시 전임읍 명합 동대문구 군무를 명합

양주군 구리면 지방행정주사보 吳 溫 泳

서울특별시 전임읍 명합 동대문구 군무를 명합

양주군 구리면 지방농업이사보 鄭 秀 鍾

서울특별시 전임읍 명합 동대문구 군무를 명합

양주군 구리면 지방농업이사보 沈 載 堯

서울특별시 전임읍 명합 동대문구 군무를 명합

●一九六三年一月一日

성동구 친호동장소장사리 지방행정주사

길 낙 수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민장을 명합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봉 태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윤 관 용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권 태 희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사개주사보 손 덕 경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농업이사보 박 명 권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심 춘 심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손 인 권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한 경 권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안 병 설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차 주 성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진주출장소장서리 지방행정주사	허 윤 권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면장윤 병합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안 소 득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급 식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농업기원 한 홍 수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조 싱 호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성 호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농업기원 박 상 국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송파출장소장서리 지방행정주사	송 윤 길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유 중 무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용 상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최 승 규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연 재 선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김 농 해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지방농업기사보 진 잉 성	
경기도광주군구천면사무소	
성동구 노해면사무소서 리지방행정주사	양 재 근

[illegible]

경기도시흥군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히	기
경기도시흥군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서	명	하
경기도시흥군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임	태	손
경기도시흥군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최	규	성
경기도시흥군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이	성	구
경기도시흥군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농업기원	정	수	양
경기도시흥군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토목기원보	민	방	용
경기도시흥군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재정서기	조	태	진
경기도시흥군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농업기원보	이	동	수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전	제	봉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서	영	원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안	경	호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농업기원보	한	승	택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조	태	진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농업기원보	이	동	수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전	제	봉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보	서	영	원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안	경	호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농업기원보	한	승	택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조	태	진
경기도김포군양동면사무소	영등포구	지방농업기원보	이	동	수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七二五호

서기一九六二년도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서기一九六二년 一二월 一일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회 계 별	추 가 경 정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비	감 고
일 반 회 계	二, 三五六, 三七四, 七五〇	二, 三二二, 九二七, 〇〇〇	四四三, 四四七, 七五〇	
수 도 회 계	九〇三, 五五四, 二七〇	九〇三, 五五四, 二七〇		
특 별 회 계	一九, 〇六四, 六八〇	一九, 〇六四, 六八〇		
시 민 회 관 계	一三一, 七四一, 二七〇	一三一, 四五五, 二七〇	二八六, 〇〇〇	
주 택 회 계	一三二, 三四五, 八九〇	一八二, 三四五, 八九〇		五〇, 〇〇〇, 〇〇〇
토 지 구 회 정 리 회 계	一一五, 六九九, 九二〇	一一五, 六九九, 九二〇		
택 지 조 성 회 계	九六, 〇四七, 一八〇	九六, 〇四七, 一八〇		
전 설 자 재 생 산 회 계	一, 二九七, 〇九三, 〇四〇	一, 三二六, 六九四, 五六〇		一九, 六〇二, 五二〇
교 육 회 계	五, 〇五六, 四〇一, 〇二〇	五, 〇八二, 二六九, 七八〇		二五, 八六八, 七七〇
합 계				

●서울특별시告示第七二九號

法律第一、一七二號(一九六二、一一、二一)서울특별시

吳道郡區의 行政區域變更에 關한 法律에 따라 서울特別市
로編入된區域과 位置를 다음과 같이 告示 함다

회 계 별	六三	에 산 액	六二	에 산 액	비	고
임 만 회 계	二, 一三三, 八八〇, 七八〇		二, 〇四六, 三一九, 三五〇		七七, 五六一, 四三〇	
수 도 회 계	一, 〇九九, 四九七, 〇七〇		六四四, 七五二, 三九〇		四五八, 七四五, 六八〇	
특 수 회 계	一九, 一〇一, 七二〇		一九, 〇六四, 六八〇		三七, 〇三〇	
공 익 회 계	三, 八七〇, 〇二〇		四, 三八〇, 〇二〇		一五一〇, 〇〇〇	
주 별 회 계	四五, 七五四, 八四〇		四, 二五〇, 一三〇		四, 五〇四, 七二〇	

新 亭 洞	永登浦區新亭洞 三九六番地
鉢 山 洞	永登浦區鉢山洞 一區
空 港 洞	空港洞 五番地
傍 花 洞	傍花洞 三番地
開 花 洞	開花洞 三七番地
果 五 洞	果海洞 五
梧 柳 洞	梧柳洞 二區四五
高 尺 洞	高尺洞 五區五一
開 峰 洞	開峰洞 一五四
水 宮 洞	溫水洞 八番地

附 則

本規則은 西曆一九六三年四月五日부디實施한다

●서울특별시고시 제七三〇호

시가一九六三年도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및 各特別회
계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시가一九六二年 一二月 二八일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토지구획정리비
토지조성비
토지보상비
토지개발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一〇五, 六四二, 九三〇
一四五, 八三二, 八六〇
七二, 八〇〇, 〇五〇
一, 一六五, 五五〇, 九七〇
四, 七八二, 九三八, 二二〇

四三, 二八三, 九三〇
四四, 五九七, 二二〇
六六, 一七四, 五五〇
一, 二九七, 〇九三, 〇四〇
四, 三二二, 九一三, 三二〇

一三七, 六四二, 〇〇〇
一〇一, 二三四, 六〇〇
五, 六三三, 四九〇
一三三, 五四一, 〇七〇
四七八, 〇二四, 八七〇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七八七호

제정하고

농림부 일반회계소유재산(대지 및 건물)을 다음에 의하
여 매각처분한다

시기 一九六二年 二월 七일

서울특별시장 윤 내 일

一, 매각재산표시 (별첨 재산목록)

二, 매각일시 一九六二年 二월 二七일 一三일

三, 매각장소 서울특별시청내 중립과

四,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

五,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一한 이상의 현금, 또는 증
은행보통수표, 또는 국채, 지가증권

六, 매각재산종류 一九六二年 二월 二六일 一五시

七, 신청방법 당시에 배포하는 소정서식에
의한다

八, 신청기간 一九六二年 二월 一三일
二〇일 一七, 〇〇

九, 기타 상세한 것은 직접 당시 산업
국농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一, 매각재산표시
제지

서울특별시영웅포구당산동二가五번지 대, 二二二號四畝
서울특별시영웅포구당산동二가二二번지 대, 一一九號
九畝

二, 건 물

서울특별시영웅포구당산동二가五번지 지상, 목조, 외가
평가, 四동, 七八號, 〇, 二, 작

광 요

행여상말자 처리 상황 보고

一, 국 적 불 명	二, 본 적 불 명	三, 주 소 불 명	四, 성 명 불 명	五, 성 명 여 자	六, 년 령 약 四 세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	------------	------------	------------	------------	--------------	------------	------------

九, 소 지 품 불 명
一〇, 사망장소 성북구 하월곡산 五번지
一一, 사망년월일 불 명
一二, 사망인 불 명
一三, 가매장지 신사리묘지
一四, 위급치 불 명

一, 국 적 불 상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명 불명 자	六, 년 령 약 二七 점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불 상	一〇, 사망장소 중앙동석산면	一一, 사망년월일 불 상
------------	------------	------------	------------	-------------	---------------	------------	------------	--------------	-----------------	---------------

六	五	四	三	二	一	四	三	二	一	九	八	七	六	五	四
년	성	성	주	본	국	취	가	사	사	소	작	인	년	성	성
병	병	병	소	적	적	급	매	인	인	지	의	상	령	병	병
약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사	안	불	불	불	불	불	불
二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산	알	상	상	상	상	상	상
七									동						
세									三						
									일						
									번						
									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四	三	二	一	九	八	七
소	작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취	가	사	사	소	작	인
지	의	상	령	별	병	소	적	적	급	매	인	인	지	의	상
품	의	상	령	별	병	소	적	적	처	장	인	인	품	의	상
불	불	불	약	어	불	불	불	불	불	불	음	정	불	불	불
상	상	상	五	자	상	상	상	상	상	상	독	능	상	상	상
			七								자	동			
			세								살	산			
												一			
												면			
												지			

一〇, 사망장소	九, 학의	八, 인	七, 인	六, 년	五, 성	四, 성	三, 주	二, 분	一, 국
二, 사망년월일	三, 사망지	四, 위금처	五, 가매장지	六, 사	七, 사	八, 사망년월일	九, 사망장소	一〇, 사망장소	一一, 사망년월일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一〇, 사망장소	九, 학의	八, 인	七, 인	六, 년	五, 성	四, 성	三, 주	二, 분	一, 국
二, 사망년월일	三, 사망지	四, 위금처	五, 가매장지	六, 사	七, 사	八, 사망년월일	九, 사망장소	一〇, 사망장소	一一, 사망년월일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불상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영등포동 二가 四二六

二	三	四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〇	一	二	三	四
사	가	위	국	본	주	성	성	년	인	작	소	사	사	사	가	위
상	매	급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망	망	망	매	위
인	장	처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망	망	망	매	위
교	상	상	한	불	불	불	불	二五	불	불	불	영	영	영	유	불
통	상	상	국	불	불	불	불	세	불	불	불	등	등	등	독	불
사	상	상		불	불	불	불	가	불	불	불	포	포	포	자	불
고	상	상		불	불	불	불	랑	불	불	불	구	구	구	살	불
												三	三	三		
												가	가	가		
												四	四	四		
												二	二	二		
												六	六	六		
												二	二	二		
												六	六	六		

三 주 소	四 성 병	五 성 변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착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매 장 소	一四 취 급 처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병	五 성 변
불 상	한 령 일	남 자	四〇세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一一월二六일	수도부속병	신사리	불 상	한 국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착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취 급 처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병	五 성 변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착 의
二〇세	불 상	불 상	불 상	성북구 진흥동 청수장	一一월三〇일	약주중독	불 상	불 상	한 국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三五세	불 상	불 상

九 소 지 품	불 상
一〇 사 망 장 소	하월곡동 七八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월 七 일
一二 사 인	교 수
一三 가 매 장 지	불 상
一四 취 금 처	불 상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별	불 상
六 년 량	五〇세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불 상
一〇 사 망 장 소	안암동 一가 二四五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월 四 일

二 사 인	불 상
三 가 매 장 소	불 상
四 취 금 처	불 상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별	불 상
六 년 령	불 상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불 상
一〇 사 망 장 소	미아리 三二七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월 一八 일
一二 사 인	조 산
一三 가 매 장 지	불 상
一四 취 금 처	불 상

八四九一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명	정 전 진
五, 성 별	여 자
六, 년 령	三三세
七, 인 상	미 상
八, 착 의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망장소	충부령원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二일
一二, 사 인	해 길 려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 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중로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명	김 상 수
五, 성 별	여 자
六, 년 령	四〇일
七, 인 상	미 상
八, 착 의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망장소	영 아 원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二일
一二, 사 인	금상태원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 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중로구청

四 성 명	五 성 명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귀 금 처
김 강 동	녀 자	二 세	미 상	미 상	미 상	영 아 원	一一월 一 일	금성기관지엽	신사리 공동묘지	미 상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명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한 국	미 상	미 상	미 상	김 활 난	녀 자	一 세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귀 금 처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미 상	미 상	미 상	영 아 원	一一월 三 일	금성기관지엽	신사리 공동묘지	종로구청	한 국	미 상	미 상
四 성 명	五 성 명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귀 금 처
미 상	미 상	二 개 월	녀 자	김 경 재	미 상	미 상	한 국			

一〇, 사망장소	영 아 린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二일
一二, 사 인	위 장 연
一三, 가 대 장 지	신사리 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종로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명	김 향 숙
五, 생 령	녀 자
六, 년 령	七세
七, 인 상	미 상
八, 착 의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망장소	영 아 린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二일
一二, 사 인	패 연 증

一三, 가 대 장 지	신사리 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종로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명	최 순 남
五, 생 령	녀 자
六, 년 령	一세
七, 인 상	미 상
八, 착 의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망장소	영 아 린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二일
一二, 사 인	홍영호, 패 연
一三, 가 대 장 지	신사리 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종로구청

一、국 적	二、본 적	三、주 소	四、국 적	五、성 명	六、년 령	七、인 상	八、작 의	九、소 품	一〇、사 망장소	一一、사 망년월일	一二、사 망일	一三、가 매장지	一四、위 급처
한 국	미 상	미 상	미 상	김 오 수	여 자	미 상	미 상	미 상	영 아 원	一一월二六일	금성패염	신사리 공동묘지	미 상
三、주 소	二、본 적	一、국 적	四、국 적	五、성 명	六、년 령	七、인 상	八、작 의	九、소 품	一〇、사 망장소	一一、사 망년월일	一二、사 망일	一三、가 매장지	一四、위 급처
충북 대전시	미 상	한 국	미 상	김 오 수	여 자	미 상	미 상	미 상	영 아 원	一一월二六일	금성패염	신사리 공동묘지	미 상

四、성 명	五、성 명	六、년 령	七、인 상	八、작 의	九、소 품	一〇、사 망장소	一一、사 망년월일	一二、사 망인	一三、가 매장지	一四、위 급처	一五、신 사리 공동묘지	一六、위 급처
윤 행 화	여 자	五八세	미 상	미 상	미 상	충북 영원	一一월五일	영양분양중	신사리 공동묘지	충로구청	충로구청	충로구청
四、성 명	五、성 명	六、년 령	七、인 상	八、작 의	九、소 품	一〇、사 망장소	一一、사 망년월일	一二、사 망인	一三、가 매장지	一四、위 급처	一五、신 사리 공동묘지	一六、위 급처
한 국	미 상	미 상	미 상	미 상	미 상	충북 영원	一一월五일	영양분양중	신사리 공동묘지	충로구청	충로구청	충로구청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금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대 장 지	一四 위 금 처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명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금
미 상	미 상	미 상	증 부 명 원	一一 월 일	페 결 혁	신 사 리 공 동 표 지	미 상	한 국	미 상	미 상	김 순 이	이 자	一 세	미 상	미 상	미 상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대 장 지	一四 위 금 지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명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금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인
영 아 원	一一 월 일	금 성 위 장 염	신 사 리 공 동 표 지	미 상	한 국	미 상	미 상	김 환 남	이 자	一 세	미 상	미 상	미 상	영 아 원	一一 월 일	금 성 위 장 염

八四九七

四 성 명	五 성 별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 당 장 소	一一 사 당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매 장 소	一四 위 급 지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별	六 년 령
김 기 현	남 자	一 세	미 상	미 상	미 상	영 아 원	一 二 월 五 일	금 성 위 장 인	신 사 리 공 동 묘 지	중 로 구 청	한 국	미 상	미 상	조 란 수	남 자	二 七 세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 당 장 소	一一 사 당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매 장 소	一四 위 급 지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별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품
미 불	미 상	미 상	중 부 탕 원	一 二 월 八 일	폐 경 택	신 사 리 공 동 묘 지	중 로 구 청	한 국	미 상	미 상	남 자	九 개 월	미 상	미 상	미 상	미 상

一〇, 사망장소	사직동산 一의二九	一, 국적	한 국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一五일	二, 본적	미 상
一二, 사망인	사 태 아	三, 주 소	미 상
一三, 가매장지	신사리 공동묘지	四, 성명	이 녀 자
一四, 위급처	종로구청	五, 성별	녀 자
		六, 연령	七개월
七, 인상	미 상	八, 착의	미 상
八, 착의	미 상	九, 소품	미 상
九, 소품	영 아 원	一〇, 사망장소	영 아 원
一〇, 사망장소	一一월七일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七일
一一, 사망년월일	금성페염	一二, 사망인	금성페염
一二, 사망인		一三, 가매장소	실사리 공동묘지
		一四, 위급처	종로구청

一, 국	二, 분	三, 주	四, 성	五, 상	六, 년	七, 인	八, 작	九, 소	一〇, 사	一一, 사	一二, 사	一三, 가	一四, 귀
적	적	소	병	병	령	상	의	지	장	인	인	매	금
하	미	미	남	五개월	미	미	미	영	영	一一월	중순	신사리	종로구청
국	농	상	일	자	상	상	상	친	아	일	일	공동묘지	

四, 성	五, 성	六, 년	七, 인	八, 작	九, 소	一〇, 사	一一, 사	一二, 사	一三, 가	一四, 귀	一, 국	二, 분	三, 주	四, 성	五, 성	六, 년
병	병	령	상	의	지	장	인	인	장	지	적	적	소	병	별	령
이	녀	五개월	미	미	미	영	一一월	금성	신사리	종로구청	한	미	미	방	녀	三世
운	사		상	상	상	친	일	폐	공동묘지		국	상	상	숙	자	

七	八	九	一〇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작	작	소	사	사	가	매	귀	주	성	성	인	소
의	의	지	망	망	장	장	급	소	별	별	상	품
상	상	품	소	소	소	소	처	소	명	명	의	지
미	미	미	영	영	신	신	중	미	녀	녀	미	미
상	상	상	아	아	사	사	로	상	자	자	상	상
상	상	상	원	원	리	리	구	상	임	임	상	상
					공	공	칭	상				
					동	동						
					묘	묘						
					지	지						

七	八	九	一〇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작	작	소	사	사	가	매	귀	주	성	성	인	소
의	의	지	망	망	장	장	급	소	별	별	상	품
상	상	품	소	소	소	소	처	소	명	명	의	지
미	미	미	영	영	신	신	중	미	녀	녀	미	미
상	상	상	아	아	사	사	로	상	자	자	상	상
상	상	상	원	원	리	리	구	상				
					공	공	칭	상				
					동	동						
					묘	묘						
					지	지						

一, 국 적	한	신사리 동동묘지
二, 본 적	미	중로구정
三, 주 소	미	
四, 성 명	곽 천 이	
五, 생 별	남	자
六, 년 령	五二	세
七, 인 상	미	상
八, 작 의	미	상
九, 소 지 물	미	상
一〇, 사망장소	중부방인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一〇일	
一二, 사 인	패 결	적
一三, 가 태장소	신사리 동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중로구정	

一, 국 적	한	신사리 동동묘지
二, 본 적	미	중로구정
三, 주 소	미	
四, 성 명	녀	자
五, 생 별	八	세
六, 년 령	미	상
七, 인 상	미	상
八, 작 의	미	상
九, 소 지 물	미	상
一〇, 사망장소	예 지 동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八일	
一二, 사 인	미	상
一三, 가 태장소	신사리 동동묘지	
一四, 위 급 처	미	상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명	마	상

一〇 사 망 장 소	영 아 일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一월 一一일
一二 사	금성간절연
一三 가 매 장 소	신사리 공동묘지
一四 취 급 처	종로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상 명	김 윤 새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령	三 세
七 인 상	미 상
八 작 의	미 상
九 소 품	미 상
一〇 사 망 장 소	영 아 일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一월 一一일
一二 사 인	결핵성뇌막염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 공동묘지

一〇 취 급 처	종로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상 명	최 중 현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령	三 세
七 인 상	미 상
八 작 의	미 상
九 소 품	미 상
一〇 사 망 장 소	종로구청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一월 一一일
一二 사 인	폐결핵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취 급 처	종로구청
一 국 적	한 국

[illegible]

五 성	六 년	七 인	八 작	九 소	〇 사	一 사	二 사	三 가	四 귀	五 국	六 성	七 인	八 작	九 소	〇 사	一 사	二 사	三 가	四 귀	五 국
별	령	상	의	품	장	일	인	장	급	적	별	령	상	의	품	장	인	장	급	적
남	자	미	미	미	증	二	외	신	중	한	남	자	미	미	미	증	二	외	신	중
자	세	상	상	상	부	월	익	사	로	국	자	세	상	상	부	월	익	사	로	국

一、국	적	미	한	국	一、사망년월일	二、사망년월일	三、가매장지	四、취급처	八、착의	九、소지품	一〇、사망장소	一一、사망년월일	一二、사망인	一三、가매장소	一四、취급처
二、본	적	미	미	미	증부병원	증부병원	신사리공동묘지	종로구청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三、주	소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四、성	명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五、성	명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六、년	령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七、인	상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八、착	의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九、소	품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〇、사망장소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一、사망년월일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二、사망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三、가매장소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四、취급처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국	적	미	한	국	一、사망년월일	二、사망년월일	三、가매장지	四、취급처	八、착의	九、소지품	一〇、사망장소	一一、사망년월일	一二、사망인	一三、가매장지	一四、취급처
二、본	적	미	미	미	증부병원	증부병원	신사리공동묘지	종로구청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三、주	소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四、성	명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五、성	명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六、년	령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七、인	상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八、착	의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九、소	품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〇、사망장소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一、사망년월일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二、사망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三、가매장지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四、취급처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八五〇七

五 성	六 년	七 인	八 작	九 소	一〇 사	一一 사	一二 사	一三 가	一四 취	一 국	二 본	三 주	四 성	五 성	六 년	七 인
별	령	상	의	품	소	인	인	지	치	적	적	소	명	명	령	상
남	미	미	미	미	중	一一월二〇일	외	신	종	한	미	미	미	미	四	미
자	상	상	상	상	부	일	익	사	로	국	상	상	상	상	〇	세
					병		현	리	구							
					원			공	청							
								동								
								표								
								지								

八 작	九 소	一〇 사	一一 사	一二 사	一三 가	一四 취	一 국	二 본	三 주	四 성	五 성	六 년	七 인	八 작	九 소	一〇 사
의	금	소	인	인	지	치	적	적	소	명	명	령	상	품	지	소
미	미	중	一一월二二일	외	신	종	한	미	미	견	남	一	미	미	아	一一월二二일
상	상	부	일	익	사	로	국	상	상	은	자	四	상	상	동	일
		병		현	리	구				성		세			병	
		원			공	청									원	
					동											
					표											
					지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착	九、소	一〇、사	一一、사	一二、사	一三、가	一四、취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장	소	인	지	치
한	미	미	김	남	三	미	미	미	아	一	금	신	종
국	상	상	쌍	자	개	상	상	상	동	월	성	사	로
			동		월				병	二	폐	리	구
									원	일	염	공	청
												동	
												표	
												지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착	九、소	一〇、사	一一、사	一二、사	一三、가	一四、취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장	소	인	지	치
한	미	미	김	남	四	미	미	미	아	一	대	실	종
국	상	상	상	자	세	상	상	상	동	월	염	사	로
			수						병	二		리	구
									원	일		공	청
												동	
												표	
												지	

[illegible][illegible]

一, 국 적	한 국	충남토산성면개천리八〇八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고 승 창	
四, 성 명	남 자	
五, 성 별	三 一 세	
六, 년 령	미 상	
七, 인 상	미 상	
八, 착 의	미 상	
九, 소 지 품	중 부 병원	
一〇, 사망장소	一一월二一일	
一一, 사망년월일	페 절 해	
一二, 사 인	신사리공동묘지	
一三, 가 매 장 지	중로구청	
一四, 취 급 처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명	김 문 히	
五, 성 별	여 자	
六, 년 령	六 二 세	
七, 인 상	미 상	
八, 착 의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망장소	염잉아원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二六일	
一二, 사 인	금성위장염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취 급 처	중로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illegible]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一四	一三	一二	一一	一〇	九	八	七
소	작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취	가	사	사	사	소	작	인
지										금	매						
품	의	상	령	변	팅	소	적	적		치	장	인	일	소	품	의	상
미	미	미	개	이	김	미	비	한			신	금	영	미	미	미	
상	상	상	월	자	주	상	상	국		로	사	성	아	상	상	상	
					선					구	리	위	원				
										청	공	강					
											동	염	일				
											모		二				
											지		四				

一〇, 사망장소	영 아 된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二四일
一二, 사 인	급성폐렴
一三, 가매장지	신사리 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종로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명	김 숙 남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령	一 개월
七, 인 상	미 상
八, 착 의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망장소	영 아 원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二二일
一二, 사 인	휴인상폐인

一三, 가매장지	신사리 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종로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전남광산군임곡면박호리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명	양 우 중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령	二八 세
七, 인 상	미 상
八, 착 의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망장소	중부병원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월九일
一二, 사 인	폐결핵
一三, 가매장지	신사리 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종로구청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생 명	五, 생 명	六, 생 명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一〇, 사 망장소	一一, 사 망년월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대장지	一四, 위 급처
한 국	미 상	미 상	미 상	여 자	六 五 세	미 상	미 상	미 상	중 우 병 선	一 二 월 八 일	패 전 역	신 사 리 공 동 묘 지	종 로 구 청

四, 생 명	五, 생 명	六, 생 명	七, 인 상	八, 작 의	九, 소 지	一〇, 사 망장소	一一, 사 망년월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대장지	一四, 위 급처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생 명	五, 생 명	六, 생 명
중 우 일	남 자	八 개 월	미 상	미 상	미 상	영 아 원	一 二 월 二 四 일	주 역 호 의 연	신 사 리 공 동 묘 지	종 로 구 청	한 국	미 상	미 상	김 성 영	여 자	九 개 월

七	八	九	一〇	一一	一二	一三	一四	七	八	九	一〇	一一	一二	一三	一四
인	작	소	사	사	사	가	취	인	작	소	사	사	사	가	취
의	의	지	망	망	망	매	금	의	의	지	망	망	망	매	금
삼	품	품	장	장	장	장	처	삼	품	품	장	장	장	장	처
미	미	미	영	영	영	신	종	미	미	미	아	아	아	사	로
상	상	상	원	원	원	리	구	상	상	상	원	원	원	동	창
						공	창							동	창
						동								동	
						묘								묘	
						지								지	

七	八	九	一〇	一一	一二	一三	一四	七	八	九	一〇	一一	一二	一三	一四
인	작	소	사	사	사	가	취	인	작	소	사	사	사	가	취
의	의	지	망	망	망	매	금	의	의	지	망	망	망	매	금
삼	품	품	장	장	장	장	처	삼	품	품	장	장	장	장	처
미	미	미	영	영	영	신	종	미	미	미	아	아	아	사	로
상	상	상	원	원	원	리	구	상	상	상	원	원	원	동	창
						공								동	
						동								동	
						묘								묘	
						지								지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작	九、소	一〇、사	一一、사	一二、사	一三、가	一四、위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장	소	인	장	지
한	미	미	송	남	一	미	미	미	영	一一월九일	미일아	신사리	종로구청
국	상	상	애	자	일	상	상	상	원		금성중	공동묘지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작	九、소	一〇、사	一一、사	一二、사	一三、가	一四、위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장	소	인	장	지
한	미	미	미	생	후	미	미	미	종로로四가一一八의전노변	一一월九일	식재유기	신사리공동묘지	용산구청
국	상	상	상	자	일	상	상	상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작	九、소	一〇、사	一一、사	一二、사	一三、가	一四、위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장	소	인	장	지
한	미	미	미	생	후	미	미	미	종로로四가一一八의전노변	一一월九일	식재유기	신사리공동묘지	용산구청
국	상	상	상	자	일	상	상	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소	작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지								
품의	상의	령별		밍소	적	적		
미	미	미	생 후 三 일	여 자	미 상	미 상	미 상	한 국
상	상	상						

○	九	八	七
사망장소	소	착	인
一一			
사망년월일	지		
一二			
사			
三四			
가매장지	인		
이삼			
취급처			
용산구청			

서계동 四七전노개천
— 월 三〇 일

신사리공동묘지

사 산 아

一〇, 사 망 장 소	서루이촌동한강백사장
一一, 사 망 년 월 일	경一一월二七일
一二, 사	영양실조
一三, 가 대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명	미 상
五, 생 령	남 자
六, 년 령	약二五
七, 인 상	미 상
八, 작 의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 망 년 월	원호로一加一一
一一, 사 망 장 소 일	一一월二七일
一二, 사 인	약물중독

一三, 가 대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경남마산시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명	김 관 선
五, 생 령	여 자
六, 년 령	二二세
七, 인 상	미 상
八, 작 의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 망 장 소	시립남부병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一월二七일
一二, 사 인	금성대장염
一三, 가 대 장 지	가토리의대교부
一四, 위 급 처	용산구청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착	九、소	一〇、사	一一、사	一二、사	一三、가	一四、취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장	인	장	지	급
한	미	미	김	남	약	미	미	미	시	의	카	카	용
국	상	상	정	자	三	상	상	상	립	출	토	토	산
			덕		八				남	현	릭	릭	구
									부		의	의	청
									병		대	대	
									원		교	교	
											부	부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착	九、소	一〇、사	一一、사	一二、사	一三、가	一四、취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명	별	령	상	의	품	장	인	장	지	급	적	적	소	명	별	령
미	남	약	미	미	미	시	의	카	카	용	한	경	미	박	남	一
상	자	五	상	상	상	립	출	토	토	산	국	남	상	성	자	九
		〇				남	현	릭	릭	구		부	열	열	세	세
		식				부						산	상	상		
						병						부				
						원						부				
												부				

~~2408~~

四 성	五 성	六 년	七 인	八 작	九 소 지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대 장 지	一四 위 급 처	개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별
최 훈 동	남 사	五 二 세	미 상	미 상	미 상	시립남부병원	一一월 一〇 일	외 출 인	서울의대교부	용산구청	一四부	한 국	미 상	미 상	미 상	남 자

六 년	七 인	八 작	九 소 지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대 장 지	一四 위 급 처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별	六 년	七 인	八 작
七 〇 세	미 상	미 상	미 상	서울역개찰구	一一월 一 일	심장마비	신사리묘지	중 구 청	한 국	미 상	미 상	미 상	녀 자	二 四 세	미 상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 망 장 소	남산단군골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一월 일
一二 사 인	약물중독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묘지
一四 취 급 처	중 구 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미 상
三 주 소	미 상
四 성 병	미 상
五 성 별	녀 자
六 년 령	二〇 세
七 인 상	미 상
八 착 의	미 상
九 소 지 품	미 상
一〇 사 망 장 소	장춘二가산四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一월六일

[illegible]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착	九、소	〇、사	一、사	二、사	三、가	四、취	一、국
적	적	소	소	소	령	상	의	의	장	년	인	매	금	적
한	한	미	미	미	남	미	미	미	양	一	약	신	중	한
국	국	상	상	상	자	세	상	상	동	八	물	사	구	국
二、분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착	九、소	〇、사	一、사	二、사	三、가	四、취	一、국	二、분
적	소	명	명	령	상	의	의	장	년	인	매	금	적	적
진	중	이	니	二	미	미	미	양	一	약	신	중	한	진
복	구	부	자	〇	상	상	상	동	八	물	사	구	국	복
완	평	동												완
추	二													추
구의														구의
변														변

七	六	五	四	三	二	一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상	령	빈	빙	소	적	적
미	三	남	미	미	미	한
	四					
상	세	자	상	상	상	국

一四	一三	一二	一一	一〇	九	八	七	六	五
취	가	사	사	사	소	작	인	년	상
급	매	장	인	망	지				
처	장	지		장	품	의	상	령	별
	신	미	一	인	미	미	一	남	
	사	숙	二	원	상	상	세	자	
	리	아	월	二					
	묘		八	八					
	지		일	二					
중	구								
청	청								

一〇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사	소	작	인	년	성	성	주	본	국
망	지								
장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소									
양	미	미	미	四	남	미	미	미	한
동				五	자	상	상	상	
五	상	상	상	세					국
一									

一四	一三	一二	一一	一〇	九	八
취	가	사	사	사	소	작
급	매	장	인	망	지	
처	장	지		장	품	의
	신	미	一	인	미	미
	사	상	二	원	상	상
	리		九	二		
	묘		일			
	지					
중	구					
산	산					

八五二五

一、사망년월일	一、국적	一、사망년월일	一、사망년월일
二、사망인	二、본적	二、사망인	二、사망인
三、가배장지	三、주 소	三、가배장지	三、가배장지
四、취급처	四、성명	四、취급처	四、취급처
	五、성명		五、성명
	六、년월		六、년월
	七、인상		七、인상
	八、착의		八、착의
	九、소지품		九、소지품
一〇、사망장소		一〇、사망장소	一〇、사망장소
一一、사망년월일		一一、사망년월일	一一、사망년월일
一二、사망인		一二、사망인	一二、사망인
一三、가배장지		一三、가배장지	一三、가배장지

一、사망년월일
 二、사망인
 三、가배장지
 四、취급처
 五、성명
 六、년월
 七、인상
 八、착의
 九、소지품
 一〇、사망장소
 一一、사망년월일
 一二、사망인
 一三、가배장지

一、국적	一、사망년월일	一、사망년월일	一、사망년월일
二、본적	二、사망인	二、사망인	二、사망인
三、주 소	三、가배장지	三、가배장지	三、가배장지
四、성명	四、취급처	四、취급처	四、취급처
五、성명			
六、년월			
七、인상			
八、착의			
九、소지품			
一〇、사망장소			
一一、사망년월일			
一二、사망인			
一三、가배장지			
一四、취급처			

一、국적
 二、본적
 三、주 소
 四、성명
 五、성명
 六、년월
 七、인상
 八、착의
 九、소지품
 一〇、사망장소
 一一、사망년월일
 一二、사망인
 一三、가배장지
 一四、취급처

八, 착 의	八, 착 의	一, 국 적	一, 국 적
九, 소 지 금	九, 소 지 금	二, 본 적	二, 본 적
一〇, 사 망 장 소	一〇, 사 망 장 소	三, 주 소	三, 주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 성 명	四, 성 명
一二, 사 망 장 지	一二, 사 망 장 지	五, 성 명	五, 성 명
一三, 가 대 장 지	一三, 가 대 장 지	六, 년	六, 년
一四, 귀 금 처	一四, 귀 금 처	七, 인	七, 인
		八, 착 의	八, 착 의
		九, 소 지	九, 소 지
		一〇, 사 망 장 소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망 장 지	一二, 사 망 장 지
		一三, 가 대 장 지	一三, 가 대 장 지
		一四, 귀 금 처	一四, 귀 금 처

八, 착 의	八, 착 의	一, 국 적	一, 국 적
九, 소 지 금	九, 소 지 금	二, 본 적	二, 본 적
一〇, 사 망 장 소	一〇, 사 망 장 소	三, 주 소	三, 주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一, 사 망 년 월 일	四, 성 명	四, 성 명
一二, 사 망 장 지	一二, 사 망 장 지	五, 성 명	五, 성 명
一三, 가 대 장 지	一三, 가 대 장 지	六, 년	六, 년
一四, 귀 금 처	一四, 귀 금 처	七, 인	七, 인
		八, 착 의	八, 착 의
		九, 소 지	九, 소 지
		一〇, 사 망 장 소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망 장 지	一二, 사 망 장 지
		一三, 가 대 장 지	一三, 가 대 장 지
		一四, 귀 금 처	一四, 귀 금 처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경기도	포천군
三、주	소	시립경생원	
四、성	명	신	창학
五、성	별	불	상
六、년	령	四	一세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불	상
一〇、사	망장소	시립경생원	
一一、사	망년월일	불	상
一二、사	인	대	염성
一三、가	매장지	불	상
一四、취	금	서대문구청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진북	강개군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임	관용
五、성	별	불	상
六、년	령	五	六세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불	상
一〇、사	망장소	시립경생원	
一一、사	망년월일	불	상
一二、사	인	간	진병증
一三、가	매장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취	금	서대문구청	

一、국	적	한	국
二、본	적	전남	나주군
三、주	소	시립경생원	

四 성 명	五 성 별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착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망장소	一一 사망년월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대 장 지	一四 취 급 처
홍 봉 수	남 자	三 세	불 상	불 상	불 상	시립경생원	불 상	피 출 령	신사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별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착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망장소	一一 사망년월일
한 국	평북 철선군	시립경생원	김 응 선	남 자	四 세	四 성 명	五 성 별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착 의

七 인 상	八 착 의	九 소 지 품	一〇 사망장소	一一 사망년월일	一二 사 인	一三 가 대 장 지	一四 취 급 처	一 국 적	二 본 적	三 주 소	四 성 명	五 성 별	六 년 령	七 인 상	八 착 의	九 소 지 품
불 상	불 상	불 상	시립경생원	불 상	폐 결 핵	신사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한 국	경남 함양군	시립경생원	심 상 순	남 자	六 세	불 상	불 상	불 상

一〇. 사 망 장 소	사람경생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불 상
一二. 사 인	맹장염만성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취 급 처	서대문구청
一. 국 적	한 국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남 자
五. 성 별	불 상
六. 년 령	생후 一 개월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품	불 상
一〇. 사 망 장 소	사람경생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불 상
一二. 사 인	불 상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취 급 처	서대문구청
一. 국 적	하 국
二. 본 적	경기도 개성시
三. 주 소	사람경생원
四. 성 명	이 성 양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령	九 八 세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품	불 상
一〇. 사 망 장 소	사람경생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불 상
一二. 사 인	심장탄막증
一三. 가 매 장 지	신사리공동묘지
一四. 취 급 처	서대문구청

一、국	적	한	국	一〇、사망장소	시립경생원	불	상	一一、사망년월일	불	상	一二、사	인	유	산	신사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一四、취급처	서대문구청																														
二、분	적	불	상	三、주	불	상	四、성	병	남	자	상	五、년	별	고	아	六、작	의	불	상	七、인	상	八、소	지	품	九、소	지	품	一〇、사망장소	시립경생원	불	상	一一、사망년월일	불	상	一二、사	인	유	산	신사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一四、취급처	서대문구청						
一、국	적	불	상	二、분	적	불	상	三、주	소	적	불	상	四、성	병	남	자	상	五、년	별	고	아	六、작	의	불	상	七、인	상	八、소	지	품	九、소	지	품	一〇、사망장소	시립경생원	불	상	一一、사망년월일	불	상	一二、사	인	유	산	신사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一四、취급처	서대문구청
一、국	적	불	상	二、분	적	불	상	三、주	소	적	불	상	四、성	병	남	자	상	五、년	별	고	아	六、작	의	불	상	七、인	상	八、소	지	품	九、소	지	품	一〇、사망장소	시립경생원	불	상	一一、사망년월일	불	상	一二、사	인	유	산	신사리공동묘지	서대문구청	一四、취급처	서대문구청

九 소 지 공	八 작 의	七 인 상	六 년 경	五 성 별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一四 귀 금 차	一三 가 대 장 지	一二 사 인	一〇 사 망 장 소	九 소 지 공	八 작 의	七 인 상
불 상	불 상	불 상	一 二 세	남 자	김 홍 기	지 립 경 생 원	한 국	한 국	서 대 문 구 청	선 사 리 공 동 묘 지	사 대 아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一三 사 인	一〇 사 망 장 소	九 소 지 공	八 작 의	七 인 상	六 년 경	五 성 별	四 성 명	三 주 소	二 본 적	一 국 적	一四 귀 금 차	一三 가 대 장 지	一二 사 인	一〇 사 망 장 소	九 소 지 공
대 장 연 습 장	불 상	지 립 경 생 원	불 상	불 상	불 상	二 四 세	남 자	우 송 호	지 립 경 생 원	한 국	한 국	불 상	선 사 리 공 동 묘 지	대 장 연 습 장	미 상

四 성	五 성	六 년	七 인	八 작	九 소	一〇 사	一一 망	一二 장	一三 지	一四 품	一五 의	一六 상	一七 령	一八 별	一九 명	二〇 천	二一 영	二二 기										
상	령	별	명	소	적	적	국	본	주	성	성	년	인	작	소	지	망	장	지	품	의	상	령	별	명	천	영	기
불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四	六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八 작	九 소	一〇 사	一 망	二 장	三 지	四 품	五 의	六 상	七 령	八 별	九 명	一〇 천	一 영	二 기	三 자	四 상	五 상	六 상	七 상	八 상	九 상	一〇 상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二、본 소 적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불 상	五、성 별 녀 자	六、년 령 생후 一 개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불 상	一〇、사 망 장 소 시립동부병원	一一、사 망 년 월 일 불 상	一二、사 인 심장마비영양실조	一三、가 매 장 지 망우리묘지	一四、위 급 처 동대문구청	
一、국 적 불 상	二、본 적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불 상	五、성 별 녀 자	六、년 령 생후 一 개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불 상	一〇、사 망 장 소 시립동부병원	一一、사 망 년 월 일 불 상	一二、사 인 심장마비영양실조	一三、가 매 장 지 망우리묘지	一四、위 급 처 동대문구청

五、성 별 여 자	六、년 령 五 八 세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불 상	○ 사 망 장 소 시립산부병원	一、사 망 년 월 일 불 상	二、사 인 뇌출혈 만신창수	三、가 매 장 지 망우리묘지	四、위 급 처 동대문구청
一、국 적 불 상	二、본 적 불 상	三、주 소 불 상	四、성 명 불 상	五、성 별 남 자	六、년 령 五 五 세	七、인 상 불 상	八、착 의 불 상	九、소 지 품 불 상	一〇、사 망 장 소 시립산부병원

八五三七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불 상
一〇. 가 망 장 소	시립산부병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불 상
一二. 사 인	영양실조
一三. 가 매 장 지	망우리묘지
一四. 위 급 처	동대문구청
一. 국 적	불 상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김현숙
五. 성 별	녀 자
六. 년 령	三九세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불 상
一〇. 사 망 장 소	시립산부병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불 상
一二. 사 인	최현중 노도중
一三. 가 매 장 지	망우리묘지
一四. 위 급 처	동대문구청
一. 국 적	불 상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녀 자
五. 성 별	생후 一〇일
六. 년 령	생후 一〇일
七. 인 상	불 상
八. 착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불 상
一〇. 사 망 장 소	청량리동 산 一
一一. 사 망 년 월 일	불 상
一二. 사 인	불 상
一三. 가 매 장 지	망우리묘지

一四	국	적	불	상	서대문구청
一	국	적	불	상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심 두 히	자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령	四 七 세		
七	인	상	불	상	
八	작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불	상	
一〇	사	망 장 소	청량리동산 一六八		
一一	사	망 년 월 일	미	상	
一二	사	인	심장기능부진고혈압		
一三	가	매 장 지	망우리묘지		
一四	위	급 처	서대문구청		
一	국	적	불	상	

二	본	소	불	상	
三	주	명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별	남	자	
六	년	령	五〇 세		
七	인	상	불	상	
八	작	의	불	상	
九	소	지 품	불	상	
一〇	사	망 장 소	시립산부병원		
一一	사	망 년 월 일	불	상	
一二	사	인	영양실조		
一三	가	매 장 지	망우리묘지		
一四	위	급 처	서대문구청		
一	국	적	불	상	
二	본	적	불	상	
三	주	소	불	상	
四	성	명	불	상	

五 성	六 년	七 인	八 작	九 소 지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취 급 처	一 국	二 본	三 주	四 성	五 성	六 년	七 인
별	령	상	의	품	소	일	인	지	처	적	적	소	명	별	령	별
녀	생 후	불	불	불	답 십 리	불	출 산 중 질 식 사	망 우 리	서 대 문 구 청	불	불	불	불	녀	녀	녀
자	十 일	상	상	상	三七五	상	망 우 리	모 지		상	상	상	상	자	자	자

八 작	九 소 지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一二 사	一三 가 매 장 지	一四 취 급 처	一 국	二 본	三 주	四 성	五 성	六 년	七 인	八 작	九 소 지	一〇 사 망 장 소	一一 사 망 년 월 일
의	품	소	일	인	지	처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소	일
미	미	용 두 동	미	유	망 우 리	서 대 문 구 청	한	미	미	미	남	四	미	미	미	중 앙 의 회 원	五二월五日
상	상	一九一四	상	기	모 지		국	상	상	상	자	세	상	상	상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작	九、소	코○사	一、사	二、사	三、가	四、취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망장소	당년월일	사	매	금
한	미	미	미	남	생후약二일	미	미	미	하왕십리동 二四二	一一월一一일	양	상	성동구청
국	상	상	상	자		상	상	상			실조	리공동묘지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작	九、소	○사	一、사	二、사	三、가	四、취
적	적	소	명	별	령	상	의	품	망장소	당년월일	사	매	금
한	미	미	미	남	임신 四개월	미	미	미	선남동 九四	一一월一七일	사	매	성동구청
국	상	상	상	자		상	상	상			대	리공동묘지	

